

# 학사제도 규정



1. 성균관대학교학칙	• 129
2. 성균관대학교학칙 시행세칙(학사과정)	• 180
3. 성균관대학교학칙 시행세칙(대학원과정)	• 191
4. 계약학과운영규정	• 203
5.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사범대학)	• 207
6.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 216
7.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 231

Truly,  
Global Leading University







# 1. 성균관대학교 학칙

##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및 인재상)** ①본교는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의 교수, 연구와 유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교육을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②본교의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의예지의 품성과 신언서판(身言書判)의 능력을 갖춘 교양인
2.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디지털시대의 신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3.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

**제3조(정의)** ①“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복합학위과정”이라 함은 의무전문석사학위(M.D.)와 의학학술박사학위(Ph.D.)를 동시에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모두를 말한다.

③“학과간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학·연·산협동과정”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안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협동과정을 말한다.

⑤“연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여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2 장 편 제

### 제 1 절 교육조직

**제4조(교육조직)** ①본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을 둔다.

1. 학부대학
2.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생명공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②본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경전문대학원, 중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수자원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국가전략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번역·테솔(TESOL)대학원, 생활과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경영대학원(IMBA), 문화융합대학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③단과대학내에 2이상의 학과가 통합된 학부를 둘 수 있다.

④학제간 융복합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성균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을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과정)** ①대학에 학사과정을 두며,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



과정을 둔다.

- ③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한다)을 둔다.
- ④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 ⑤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과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⑥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⑦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과정별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 ①학사과정의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학부)(이하 '학과'라 한다)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일반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협동과정)와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③전문대학원에 두는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④특수대학원에 두는 학과(전공)와 입학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⑤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의 학과 진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⑥학사과정에는 제1항의 학과 외에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이 자율 설계하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의2(학사과정의 전공 이수 방법)** 학사과정 학생은 소속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조(학장 등)** ①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경우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연계전공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②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교육과 관할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부속기관 및 부설연

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의2(학부대학장)** ①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며, 학부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주임교수와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학부대학장은 학사과정의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을 총괄하며, 계열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전공 진입 이전까지의 학사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③학부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④학부대학의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7조의3(융합원장)** ①융합원에 융합원장을 두며, 융합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대학원장등)** ①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필요한 수의 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②대학원에 두는 학과 또는 전공(학과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에 학과장(주임교수, 프로그램주임교수)을 따로 둘 수 있다.

③대학원에 연구지도를 담당할 연구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 2 절 교직원

**제9조(교원의 구분)** 본교의 교원은 총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본교의 행정을 통할하고, 교육 및 연구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한다.

②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 및 의학분야에 각각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직무를 분담한다.

1.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 관한 사항, 동문회 관리 및 대학발전기금 모금



에 관한 사항

2. 자연과학캠퍼스부총장: 자연과학캠퍼스에 관한 사항
3. 의무부총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의학 분야에 관한 사항

③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④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1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 절 부속 및 부설기관 등

**제12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학술정보관, 동아시아학술원, 박물관, 성대신문사, 성균타임즈사, 성대방송국, 출판부, 양현재, 양현관, 건강센터, 스포츠단, 기숙사, 식물원, 공동기기원, 학생인재개발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육학술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나노구조물리연구단,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창업지원단, 양성평등센터, 성균바이오융합과학기술원, 성균경영원, 실험동물센터, 지능정보융합원
2. 부설연구기관 : 인문학연구원(동아시아역사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프랑스어권연구소,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정보관리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철학과인문교육연구소, 영미문화연구소, 중국문화연구소, 독일어권사회문화연구소, 러시아문화연구소, 성균일본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응용심리연구소,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도시발전연구소, 국정평가연구소,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거버넌스연구센터,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인권과개발센터,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기초과학연구원(기초과학연구소,

창의연구소, 국방화생탐지특화연구센터, 양자물질초전도체창의연구소, 나노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 우주과학기술연구소, 수리과학연구소,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융합화학연구소), IT융합연구원(정보통신기술연구소, 산업전자응용연구소, 전력IT인력양성센터, 직류배전용 전력기기 설계기술 인력양성센터, 무선에너지하비스탕통신융합연구센터,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 청정공기연구센터, 지능시스템연구소, IT가속기공학연구소, 아날로그RF 회로및시스템연구소, 휴먼ICT융합연구소), 공학연구원(고분자기술연구소, 첨단소재기술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건설환경연구소, 무배출형환경설비지원센터, 품질혁신센터, 로봇공학연구소, 녹색도시건축연구소, NU-SKKU 플라즈마-나노신소재국제공동연구소, 화공융합기술연구소, 계면연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센터,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소, 플라즈마응용표면기술연구소, 정보통신융신기능성소재및공정연구소, 미래가전연구소, 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 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소, 성균건축도시설계원,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 에너지프론티어 연구소, 차세대 융합 에너지저장 기술센터, 차세대자동차융복합소재연구소), 약학연구원(글로벌신약연구소, 에피지놈제어연구센터, 제제기술지원센터), 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코스메틱스연구센터, 바이오로직스연구센터), 의과학연구원(의학연구소, 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법학연구원(글로벌과학기술법연구소,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현대중국연구소, 무역연구소, 응용통계연구소, 경영연구소, 체력과학연구소, 정보통신경영공동연구소, 나노튜브및나노복합구조 연구센터, 경제연구소,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 신개념융합에너지과학연구소, 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진단/치료용고분자소재연구소, 트랜스미디어연구소, 유가예술문화콘텐츠연구소, 동양철학문화연구소, 교육정책연구원(사교육혁신교육연구소,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전자화



물창의소재 연구소,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컨버전스연구소,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연구소,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 3. 부설교육기관 : 한국사서교육원, 성균어학원
- ②제1항의 부속·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산학협력단)** ①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산학협력단 하부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2조의3(부속병원)** ①본교 의과대학에 삼성창원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둔다.

- ②부속병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 장 학사운영

#### 제 1 절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3조(학년도·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제2항에 따른 학기는 교무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학년도별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제1항에 따른 학년도별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 ③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33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5조(휴업일)** ①본교의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여름방학
- 2. 겨울방학
- 3. 건학기념일(9월 25일)

- 4. 공부자탄강일(9월 28일)

- 5. 일요일, 기타 국정공휴일

②총장은 제1항의 방학기간을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제 2 절 수업연한

**제16조(수업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의과대학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하고, 약학대학은 전공교육 4년으로 한다.

②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석사과정: 2년.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의학전문대학원은 4년
  - 2. 박사과정: 2년.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7년
  -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야간제 2년 6월, 계절제 3년
-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1. 학사과정 : 1년
  -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각각 6월
  - 3. 석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 : 각각 1년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 제 3 절 입학(편입학, 재입학 및 학위과정 변경 포함)

**제17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초 3주 이내로 한다.

**제18조(입학자격)** ①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외국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의 입학자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며, 해당국가의 법령상 인가여부 또는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제19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19조의2 삭제**

**제20조(정원 외 입학)**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교관등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어촌학생, 사회적 배려대상자, 계약학과 지원자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농어촌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학사과정에 한한다.

**제21조(입학전형)** 입학전형(약학대학으로의 모집단위 이동 및 편입학을 위한 전형 포함)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편입학 및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편입할 수 있는 자는 타 대학에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 수료자(대학원과정은 편입학하는 학기의 전 학기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학사 편입학할 수 있다.

④학사경고제적자, 징계제적자 및 제적 후 10년 이상 경과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⑤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가 재입학한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제51조제7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은 동일 학위과정으로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⑦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학위과정의 변경)**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제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이 동일 학과의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생 입학년도의 박사과정 결원(미충원, 제적, 자퇴) 범위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 절 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제23조(휴학·복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기 초가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각 과정별 통산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과정: 6학기. 다만, 의과대학은 8학기
2. 석사과정: 3학기.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학기, 의학전문대학원은 6학기



3. 박사과정: 3학기.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10학기

4.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③학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유로 인하거나, 병역법상 복무의무, 임신·출산·육아 또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⑤휴학 및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적·사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학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학사과정 중 제5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유급 회수 2회인 자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는 경우(복학, 유급, 재입학 전 학사경고 회수를 포함한다. 다만,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입학 이후부터 기산한다.)

5. 학사과정 신입학자로서 최초등록학기부터 2개 학기 연속으로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00미만인 자 (복학, 재입학 전 학기 포함)

6.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의과대학 학생 중 통산 4회 유급자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중 통산 3회 유급자

8. 경영전문대학원의 Global MBA 분야와 Professional MBA분야 학생 또는 중국대학원 학생 중 통산 2회 학사경고자

②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5 절 모집단위간 이동

**제25조(학사과정의 모집단위간 이동)** ①학사과정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학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의과대학으로 이동은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사범대학으로 이동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위 제1항에 불구하고 약학대학으로의 모집단위 이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총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6조(대학원과정의 전과 및 분야 변경)** 대학원 재학생에 대해 전과 및 전공분야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제 6 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7조(등록)** ①입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취득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등록금)** ①해당 학년도 적정 등록금의 산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등록금은 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적정 등록금 산정 결과를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등록금의 징수는 학기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한다.

1. 제16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2.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

**제28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위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9-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3의3. 등록된 자가 학기 중에 휴학하는 경우. 단, 병역법상 복무의무,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복학시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소정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4 장 교육과정

###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30조(교육과정)** ①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전공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운영위원회 또는 대학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②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③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31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2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창업현장실습 포함)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33조(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4조(과정별 수료학점)** ①학사과정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학기수 및 학점은 별표 10 과 같다.

②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각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5조(선수학점)** ①대학원과정에서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장이 선수학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부과된 선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선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36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수강학점)** ①학사과정 학생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다음과 같다.

인문과학계열, 법과대학, 글로벌리더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계열, 소프트웨어계열, 반도체계열, 공학계열, 건축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계열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18이내 (1,2학년)	18이내	20이내 (1,2학년)	21이내	27이내
15이내* (3,4학년)		18이내 (3,4학년)		

\* 편입학자는 최초 2개 학기 18학점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인문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3,4학년은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성적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F등급이 없는 자는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③계절수업 및 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수업은 세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1항의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강신청 결과 학기당 수강학점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2학점 범위에서 이를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 제20조에 의한 외국인 입학생으로서 수능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학점을 12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수강학점)** ①일반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신입학자는 처음 2개 학기에 한하여, 석박사통합과정 신입학자는 처음 1개 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②전문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학술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로 하며, 전문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의학전문대학원 27학점 이내)에서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술학위과정은 2개 학기에 한해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2개 학기에 한해 21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③특수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2개 학기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및 경영대학원(IMBA)의 추가 수강학점은 학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④선수과목은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⑤대학원 집중과정에서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대학원별 학기당 수강학점의 2/3 범위 내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학기당 수강학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8조(특별학점 취득)** ①특별히 따로 지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취득특별시험 또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수강학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특별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과정수료)** ①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별 소요학점(국제어수업 소요학점 포함)을 모두 충족하여 각 학위과정별 소요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달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제40조(학사과정의 졸업)** ①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1. 3품(인성품, 국제품, 창의품)의 각 분야별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3품의 모든 분야 또는 일부 분야에 있어 면제를 받은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학장이 별도의 졸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1조(대학원과정의 졸업)** ①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학위(학술학위,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1.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심사에 합격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2. 석사학위는 논문을 대체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 제1호의 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위원(석사학위는 3인 이상, 박사학위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④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42조(학점의 인정)**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3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 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모집단위간 이동 및 전과자의 학점인정)** 모집단위간 이동을 허가 받은 자 및 전과자의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시험과 성적

**제47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②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③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일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한다.

⑤제2항의 출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총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성적)** ①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②학업성적은 등급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C+	2.5
A	4.0	C	2.0
B+	3.5	D+	1.5
B	3.0	D	1.0
		F	0.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대학원에서는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학생이 수강한 대학원과목은 I성적 부여할 수 없으며 성적유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D”등급 이상과 제3항의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 제 3 절 복수전공 및 인증프로그램

**제49조(학사과정의 복수전공)** ① 삭제

②재학 중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인정한다.

③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교내 전문대학원간의 복수학위)** ①전문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전문대학원간의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내 다른 전문대학원과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문대학원 재학 중 본인 소속과 다른 교내 전문대학원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논문심사 합격 등 해당 학장이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이를 복수학위로 인정한다.

④복수학위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49조의3(학사과정의 공학교육인증)** ①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49조의4(학사과정의 성균융합인재인증)**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균융합인재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4 절 학사경고 등

**제50조(학사과정의 학사경고, 유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의과대학 학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자
2. 수강신청 미필자

②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하게 하며, 유급한 학년(학기)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3.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해당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이거나 전공과목 성적 중 F등급이 있는 경우
4. 연속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자.(직전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2개 학기까지 유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기의 학사경고는 연속 및 통산 학사경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교육실습과목에서 취득한 성적과 제38조에 의한 특별학점 성적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전공과목 중 B등급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만 무효로 한다.

**제50조의2(대학원과정의 학사경고, 유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의 Global MBA 분야와 Professional MBA 분야 학생 중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3.25 이하인 자
2. 중국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3.00 미만인 자
3. 삭제

②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하게 하며, 유급한 학년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3. 중국대학원 학생으로서 협력대학 파견을 위한 소정의 요건(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삭제
5.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해당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이거나 전공과목 성적 중 F등급이 있는 경우

③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교육실습과목에서 취득한 성적과 제38조에 의한 특별학점 성적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공과목 중 B등급 미만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만 무효로 한다.

**제50조의3(법학전문대학원의 특칙)**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제적·자퇴, 성적, 학사경고, 유급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 제 5 장 학위수여

**제51조(학위수여)** ①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학사과정 : 학사학위
2.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3. 전문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 또는 전문)



학위)

4.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②시간제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수강생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본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140학점에 달한 경우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재학 중의 탁월한 연구실적 등 특이사항을 학위증서에 부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학위는 학년도 말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달하는 자가 추가로 생긴 때에는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⑤학사과정의 제2 또는 제3전공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 2, 3전공을 모두 이수하였을 때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⑥(삭제)

⑦제1항에 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 또는 복합학위 과정을 이수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⑧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⑨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5내지 8과 같다.

**제53조(학위수여의 취소)** ①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졸업평가를 면제받고 학위를 취득한 학석사연계과정생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소하고 졸업평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④학위수여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학생지도 등**

**제54조(학생의 준수사항)**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학생회)**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57조(학생활동의 승인)** 제56조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내에서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58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9조(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에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1조(징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부총장 또는 학장이 이를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부총장·학장이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처분에 한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성행이 불량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3.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시험부정행위자
  - 5. 기타 학생의 본분에서 이탈되었다고 인정된 자
  - 6.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당시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징계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의한 징계처분은 출교로 한다.
- 1. 근신
  - 2. 정학(유기, 무기)
  - 3. 제적
  - 4. 출교
- ③제1항의 징계권자는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공개강좌

- 제62조(공개강좌)** ①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수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③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8 장 특수학생 교육 등

- 제63조(특별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학사과정의 특별한 교과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특별생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수여한다.
- 제63조의 2(교류수학생)** 본교와 국내외 다른 대학간 협정에 따라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4조(위탁생)** ①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이 위탁을 청원할 때에는 그 학력을 심사한 후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탁생으로서 정원 외로 총장이 입학할 허가(전문대학원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②위탁생이 소정의 졸업자격을 얻은 때에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제65조(시간제등록생)** ①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 당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제66조(연구과정생)** ①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 또는 연구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대학원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
- ④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당해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원별 인정 학점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 ⑤연구과정생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⑥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 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9 장 위원회 등

#### 제 1 절 교무위원회

- 제67조(설치 및 구성)** ①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총장·부총장과 일반대학원장·학장(법학전



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처장, 산학협력 단장,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단장, 성균융합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기본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 절 대학원위원회

**제70조(설치 및 구성)** ①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1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대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제 3 절 캠퍼스학장회

**제74조(설치 및 구성)** ①캠퍼스(의학분야를 포함한다. 이 절에서 같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에 캠퍼스학장회를 둔다.

②캠퍼스학장회는 각 캠퍼스 부총장, 소속 학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총장은 필요에 따라 구성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기능)** 캠퍼스학장회의 회의는 해당 캠퍼스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등 기관간의 업무조정
3.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6조(회의)** ①캠퍼스학장회의 회의는 부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절 대학운영위원회

**제77조(설치 및 구성)** ①본교 각 대학에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학장 및 학장이 소속 대학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위원과 소속 대학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제78조(기능)** 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0 장 교수회

### 제 1 절 전체교수회

**제80조(설치 및 구성)** ①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둔다.

②전체교수회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규임용교원은 직급에 불구하고 최초 2년 동안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81조(기능)**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학칙 중 주요부분의 개정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82조(회의)** ①전체교수회의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제 2 절 대학교수회

**제83조(설치 및 구성)** ①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수회를 둔다.

②대학교수회는 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규임용교원은 직급에 불구하고 최초 2년 동안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84조(기능)** ①대학교수회는 학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학장은 대학교수회의에서 결의된 중요사항은 이를 교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회의)** ①학장은 대학교수회의 회의를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총장, 부총장은 대학교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대학교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제 10 장의 2 자체평가

**제85조의2(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11 장 학칙의 개정

**제86조(학칙의 개정)** ①교무처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본교의 구성원이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공고하고 기획조정처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기획조정처장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이를 규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부 칙**

본 학칙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년 3월 24일 개정) (학무 1010-469)

- ①본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본 개정학칙은 1976학년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197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과 본 개정학칙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1975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실험대학 해당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 ⑤본 개정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제2부 학칙은 폐지한다.

**부 칙**

(1976년 12월 8일 개정) (학무 1010-1554)

본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년 1월 28일 개정) (학무 1040-121)

- ①본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중국어과와 응용생물학과의 재학생은 각각 개편된 중어중문학과와 생물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78년 3월 1일 개정)

- ①본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공대학 이학부의 계열별 모집은 197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복수전공제는 197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년 3월 2일 개정) (학무 1010-459)

- ①본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1979년 3월 1일 현재 유학대학 철학과 재학생은 문과대학 철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년 1월 9일 개정) (학무 1041. 3-32)

- ①이 개정학칙은 198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1980학년도 이 학칙 시행당시 이공대학의 이학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이과대학, 동 대학 공학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공과대학, 농학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농과대학에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사회개발학과와 공업경영학과의 재학생(2학년이상)은 각각 개편된 사회학과와 산업공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년 2월 15일 개정)

본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년 3월 17일 개정)

본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년 7월 18일 개정)

본 개정학칙은 198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년 6월 10일 개정)

- ①본 개정학칙은 198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본 개정학칙은 1981년 제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본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제2부 재학생(2학년이상)은 주간부 교과과정을 준용하며 졸업학점은 학칙시행세칙(II)의 제3조 규정에 의한다.
- ④1981학년도 본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농과대학 원예조경학과의 재학생(2학년이상)은 조경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1년 12월 1일 개정)

- ①이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법정대학 법률학과 재학생은 법과대학 재학생으로, 법정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및 사회학과 재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1983년 6월 11일 개정) (학부 1041. 3)

이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년 1월 31일 개정) (학부 1041. 3-308, 84.2.11)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의 유학대학 유교학과 재학생은 유학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 ③(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12.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4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984년 8월 14일 개정) (학부 1041.3-1477, 84.9.17)

이 개정학칙은 198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년 9월 20일 개정) (학부 25210-1415, 85.10.7)

이 개정학칙은 198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년 11월 14일 개정) (학부 25210-1124, 86.12.1)

이 개정학칙은 198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년 5월 20일 개정) (학부 25210-651, 87.5.23)

이 개정학칙은 198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년 8월 27일 개정) (학부 25210-1053, 87.8.29)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 제3항에 의거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제적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제14조 단서규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전항의 재입학자가 정원에 초과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년 1월 26일 개정) (학부 25210-376, 88.2.23)

이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년 3월 31일 개정) (학부 25210-933, 89.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는 학칙 제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별표(1-3, 1-4)의 졸업정원을 적용한다.

②사범대학의 인문사회교육계,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1986학년도의 졸업정원을 적용한다.

③졸업정원 초과 입학자에 대한 중도수료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1987학년도이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자로서 1991년 2월말까지 졸업할 자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재적학생으로 본다.

②1987학년도이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자로서 1991년 3월 1일 이후에 졸업할 자는 체육대학 체육교육과에 전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재적하고자 할 때는 이를 인정한다.

제4조(대학졸업자격고사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례조항



- ①졸업정원 초과인원으로서 대학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자는 학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졸업정원에 불구하고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졸업정원초과인원으로서 대학졸업자격고사에 불합격한 자(포기자 포함)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2)의 수료증을 준다.

**부 칙**

(1990년 3월 1일 개정) (학무 25210-589, 90.6.7)  
이 개정학칙은 199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년 3월 1일 개정) (학무 25210-552, 91.4.25)  
이 개정학칙은 199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1년 10월 11일 개정) (학무 25210-1390, 91.11.12)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21조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은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의 문과대학 도서관학과 재적생은 문헌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993년 1월 25일 개정) (학무 81412-46, 93.1.25)  
이 개정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3년 3월 31일 개정) (학무 81412-482, 93.3.31)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 1.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 제2조제3항제4호에 의거, 1987년 7월 11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중 본인이 원할 경우 제14조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제1호의 재입학자가 정원에 초과될 때에는 제3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3. 진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1992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994년 1월 13일 개정) (학무 81211-1921, 93.12.7)  
이 변경학칙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4년 2월 8일 개정) (학무 81412-570, 94.3.18)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농과대학 각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생명자원과학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년 5월 27일 개정) (학무 81412-831, 94.6.2)  
이 학칙은 199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4년 11월 8일 개정) (학무 81412-1492, 94.11.8)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낙농학과 또는 농업기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생명자원과학대학의 낙농공학과 또는 생물기전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996년 3월 1일 개정) (학무 81412-489, 96.2.29)
-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학칙중 제39조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의 개정 규정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단과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문과대학 각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인문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부로 통합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1999년 2월말까지는 동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1999년 3월 1일부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학과가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1. 유학과 · 한국철학과 및 동양철학과 재적생은 “동양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2.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불어불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노어노문학과 및 한문학과 재적생은 “어문학부” 재적생으로, 사학과 · 철학과 및 문헌정보학과 재적생은 “인문학부” 재적생으로 각각 본다.
  3. 행정학과 · 정치외교학과 · 신문방송학과 · 사회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재적생은 “사회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4. 경제학과 · 통계학과 및 농업경제학과 재적생은 “경제학부” 재적생으로, 경영학과 · 회계학과 및 산업심리학과 재적생은 “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무역학과 재적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경제학부” 또는 “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5. 생물학과 · 수학과 · 물리학과 및 화학과 재적생은 “자연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6.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정보공학과 및 제어계측공학과 재적생은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부” 재적생으로, 화학공학과 · 고분자공학과 및 섬유공학과 재적생은 “화학 · 고분자및섬유공학부” 재적생으로, 금속공학과 및 재료공학과 재적생은 “금속 · 재료공학부” 재적생으로, 기계공학과 및 기계설계학과 재적생은 “기계공학부” 재적생으로 각각 본다.
  7. 약학과 및 제약학과 재적생은 “약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8. 가정관리학과 · 의상학과 및 아동학과 재적생은 “생활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9. 낙농공학과 · 생물기전공학과 · 조경학과 및 유전공

학과 재적생은 “생명자원과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1997년 4월 4일 개정) 학무(81412-908, '97.4.4)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4월 4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학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및 생명자원과학부(조경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0년 2월 말일까지 동학과나 동 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2000년 3월 1일부터는 건축 · 조경및토목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나 원적학부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 부 칙

(1997년 5월 26일 개정) 학무(81412-1182)

이 변경학칙은 199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체육대학 각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스포츠과학대학 각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스포츠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④(학부신설 및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미술교육과, 무용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역사교육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1년 2월말까지는 동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1년 3월 1일부터는 미술교육과, 무용학과, 산업디자인학과는 예술학부 재적생으로, 역사교육과는 인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학칙의 폐지)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학칙, 성균관대학교특수대학원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대학원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일반대학원학칙 및 특수대학원학칙의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은 이 학칙에 의한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학과간 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으로 본다. 다만, 무역대학원에 설치된 과정은 국제통상대학원에, 국제협력대학원에 설치된 과정은 국제정치대학원에 각각 설치된 과정으로 본다.
- ④(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일반대학원학칙 및 특수대학원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무역대학원의 재적생은 국제통상대학원에, 국제협력대학원의 재적생은 국제정치대학원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⑤(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낙농학과 재적생은 식품·생명자원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당시 유학대학원 유교경전학과, 한국사상학과 재적생은 2001년 2월말까지 동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2001년 3월 1일부터 동양사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 다.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 국제인력개발전공 재적생은 인사조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라. 이 학칙 시행당시 무역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금융학과 재적생은 이를 각각 국제통상대학원 국제통상전공, 국제금융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 마. 이 학칙 시행당시 행정대학원 감사행정학과 재적생은 공공감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바. 이 학칙 시행당시 국제협력대학원 아태및북방지

역협력학과, 외교안보협력학과 재적생은 이를 각각 국제정치대학원 북한학과, 외교안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과로 재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 사.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학과 재적생은 출판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⑥(학부장, 대학원장등) 이 학칙 시행당시 학부장(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학과장(주임교수), 연구지도교수 및 지도교수인 자는 이 학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⑦(수업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3년, 동 학년도 제2학기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 ⑧(휴학연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연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학위과정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자의 과정별 이수학점은 24 학점이상으로 한다.
- ⑩(학기당 취득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1998학년도 제2학기 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는 제 3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40조제1항제1호의 3품인증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학년도 내지 1998학년도에 입학하여 사회봉사활동 또는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이 졸업요건이었던 학생으로서 이 학칙 시행일전까지 소정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졸업자격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이 학칙 시행이후 3품인증 중 인성품 또는 국제품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학사경고 회수 통산은 2000학년도 제1학기 학사경고부터 기산한다.
2.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 학칙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3. 제51조제3항의 개정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6호와 제52조의 개정 별표 5 내지 8은 2000년1월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재입학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학칙은 이 학칙 시행일 이후의 재입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입대휴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군입대를 사유로 휴학한 학생이 제대 후 복학할 경우에는 2002학년도까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⑤(부전공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1999학년도 이전에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종전 학칙에 따라 인정한다.

⑥(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생명자원과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학부 산업심리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3년 2월 말일까지는 동 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2003년 3월 1일부터는 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학부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3. 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생물학과, 가정학과 또는 토목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가정관리학과 또는 토목환경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당시 유학대학원 동양사상학과, 경영

대학원 재무·부동산전공 또는 국제정치대학원 북한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유학대학원 동양사상·문화학과, 경영대학원 부동산전공 또는 국제정치대학원 국제협력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 국제경영전공 또는 무역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무역·국제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2001년 3월 1일 현재 화학·고분자및섬유공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응용화학부 재적생으로, 화학·고분자및섬유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섬유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각각 응용화학부 고분자시스템공학전공, 응용화학부 텍스타일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금속·재료공학부 금속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재적생으로, 생명공학부 생물기전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바이오메카트로닉스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2001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생물기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2001년 3월 1일 현재 산업과학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과학기술대학원 재적생으로, 동 대학원 생명자원과학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01년 3월 1일 현재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로, 산업과학대학원 임상약학과, 산업보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임상약학대학원 동 학과로 각각 전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대학원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24조제1항제5호와 제36조제1항의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부(계열) 학생의 3~4학년 18학점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2001년 3월 1일 현재 교육대학원 상업교육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상업정보교육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특수대학원과정의 폐지된 학과(전공) 전문학위명은 해당 대학원장이 법령에 따라 정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 8.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34조,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3월 1일 현재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부 재적생은 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 ③(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학기당 취득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2001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입학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 ④(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3월 1일 현재 야간강좌 모집단위 재적생은 주간강좌 동일계열 모집단위(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전공은 입학당시의 모집단위 안에 설치된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 모집단위(전공)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2002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노어노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러시아어문학과 재적생으로,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섬유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유기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진공과학공학 학과간협동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나노과학공학 학과간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2. 2002년 3월 1일 현재 국제정치대학원 국제협력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국가전략대학원 국가경영전략

공 재적생으로, 국제정치대학원 외교안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국가전략대학원 외교안보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2002년 3월 1일 현재 디자인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02년 3월 1일 현재 임상약학대학원 산업보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통상대학원은 2002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4년 2월말 일까지는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4년 3월 1일부터는 경영대학원 무역·국제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적 대학원으로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4조, 제6조, 제16조, 제34조,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자로서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수료학점은 제34조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2. 2003년 3월 1일 현재 과학기술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산업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같은 대학원 산업공학과 재적생으로, 같은 대학원 임상간호학과 재적생은 임상간호대학원 임상간호학과 재적생으로 각각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4항의 개정학칙은 이 학칙 시행당시 학부 학사내규가 제정된



학부부터 적용하며, 학부 학사내규가 제정되지 않는 학부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③(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2004년 3월 1일 현재 어문학부 불어불문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어문학부 프랑수어문학전공 재적생으로, 생명공학부 식품·생명자원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2004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불어불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프랑수어문학과 재적생으로, 식품·생명자원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2004년 3월 1일 현재 과학기술대학원 산업공학대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시스템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생명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식품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04년 3월 1일 현재 디자인대학원 섬유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아트앤드텍스타일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5. 2004년 3월 1일 현재 생활과학대학원 전통복식·패션산업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패션학전공 재적생으로, 발달복지·보육경영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보육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6. 2004년 3월 1일 현재 임상약학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원 보건·사회약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7. 2004년 3월 1일 현재 Cyber MBA대학원 재적생은 경영대학원(iMBA) 재적생으로 본다.

④(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은 2004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별표1)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3항, 제7조의2는 2005년 2월 1일부터,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중국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학부·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전에 어문학부 및 인문학부, 공학계열 각 학부, 유학대학원 동양사상·문화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5년 3월1일부로 각각 문과대학, 공과대학,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문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전에 학사과정 신소재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2월말일까지는 각각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재적생으로, 2008년 3월 1일부로 신소재공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일반대학원 재료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5년 3월 1일부로 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대학으로 통합되는 학부의 2004학년도 잔여 학사 업무는 통합 대학의 학장이 승계한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학칙이외의 모든 규정에서 “학부장”으로 표기된 것은 “학부장(단과대학내 학부장 제외)”, “주임교수(학과장)”로 표기된 것은 “주임교수(학과장·단과대학의 학부장)”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사과정 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또는 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은 2009년 2월말까지 동 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2009년 3월 1일부터 전자전기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전공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일반대학원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제약학과 재적생은 계속하여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④(특수대학원 학과·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문화학과 유교경전·한국사상전공 재적생은 유교경전·예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과학기술대학원 전기에너지공학과 또는 재료금속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전기전자공학과 또는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특수대학원 폐지 및 전문대학원 분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대학원(특수)은 2006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 재적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2006년 2월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2. 2006년 3월 이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06년 9월 1일부터는 경영대학원(전문) EMBA분야 재적생으로 본다.
- ③(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영학과 및 회계학과는 2006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학칙 제3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전자전기컴퓨터공학전공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 부칙(2006년 3월 1일 시행)제2항은 삭제한다.
- ④(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 현재 생활과학부 가족경영·소비자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소비자가족학전공 재적생으로,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소비자가족학과 재적생으로,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동 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약학부 생명약협동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부 생명약개발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 ⑤(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학협동과정은 2007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2조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6조제4항 및 제52조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1. 2007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유기소재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화학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2. 2007년 9월 1일 현재 과학기술대학원 건설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u-CITY건설공학과 u-CITY건설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건설공학과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u-CITY건설공학과 건축학전공으로 전과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법과대학, 경영학(글로벌)전공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법과대학 2007학년도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 ③(소속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2008년 2월 29일 현재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예술학부 의상학전공 재적생으로, 생활과학대학원 패션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패션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전공)로 재적을 희망하는 경



우 이를 인정한다.

2. 2008년 2월 29일 현재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대중문화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08년 3월 1일부터 동 대학원 문화컨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과정별 수료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1. 2004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자로서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수료학점은 제34조제1항의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생의 수료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한다.
3. 2007학년도 이전 의상학전공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제34조제1항의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⑤(학사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법과대학 입학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제36조제1항의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또는 텍스타일시스템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2. 이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대학원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공공건축거버넌스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공건축거버넌스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③(법학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법학대학원 신설과 동시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이를 폐지하며, 석사과정은 2012

년 2월 29일자로 폐지한다.

2. 폐지일 현재 동 학위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위과정의 재적생으로 보며, 재적중인 학생의 교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2015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에, 2015년 3월 1일부터는 법학대학원에 위탁한다.

3. (본교 제반규정과 관계)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학부” 및 “학부장”으로 표기된 것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 및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보되, 2015년 3월 1일부터는 “법학대학원” 및 “법학대학원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④(적용례) 제34조제1항, 제50조제2항제3호,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과학기술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과학기술대학원 u-CITY건설공학과의와 운동처방과비만클리닉학과는 2009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③(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52조 별표7의 개정 규정중 국정관리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8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④(다른 규정의 개정)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경영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은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법학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의학대학원”으로 표기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공공건축거버넌스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건축도시디자인학



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③(적용례)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의 복합학위과정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정책학과 및 영상미디어 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IT컨설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③(약학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약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약학대학으로의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약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재적생 및 수료생도 이와 같다.
- ④(적용례) 제6조 2항 별표2 및 제52조 별표6 개정 규정 중 융합형기계설계학과 관련 부분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휴대폰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IT 융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

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12년 3월 1일 현재 학사과정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유학동양학부, 스포츠과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재적생으로,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생명공학부, 예술학부 각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각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2012년 3월 1일 현재 학사과정 생활과학부 소비자 가족학전공, 아동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아동청소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전공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3. 2012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나노과학기술협동학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아동청소년학과, 나노과학기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2012년 3월 1일 현재 유학대학원 유교경잔예학전공, 서예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유교경잔한국사상전공, 서예학동양미학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경영대학원(iMBA)에 재적 중인 학생은 경영대학원(IMBA) 재적생으로 본다.

- ③(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종전 개정 학칙 경과조치 수정) 2009년 3월 시행 개정 학칙의 부칙 제3항(법과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호를 “법학대학원 신설과 동시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분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 MBA offered in collaboration with MIT Sloan분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Global MBA분야 재적생으로 본다.
- ③(다른 규정의 개정)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MBA offered in collaboration with MIT Sloan”으로 표기된 것은 “Global MBA분야”으로 개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②(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 1.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또는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과 통합된 건축토목공학부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2.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산업약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제약산업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동통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이동통신전력전자공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초고층장대교량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각각 인정한다.
  - 3.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MS in Management 분야에 재적중인 학생과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이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각각 인정한다.

- ③(법과대학 명칭사용 및 조직유지 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 1.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과정은 2018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
  - 2. 폐지일 현재 동 학위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위과정의 재적생으로 보며, 재적중인 학

생의 교육은 2018년 2월 28일까지는 법과대학(임시의 법학부)에, 2018년 3월 1일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한다.

- 3. (본교 제반규정과 관계) 학칙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대학” 및 “대학장”으로 표기된 것은 2018년 3월 1일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
- 4. 2009년 3월 1일 시행 개정학칙의 부칙 제3항(법학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은 삭제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나노구조물리연구단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의2는 2013년 10월 1일, 제12조 제1항 제2호는 2013년 12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②(학과 명칭 변경 및 전공 통합 등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U-City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디자인대학원 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 및 전공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학생인재개발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화학공학부 및 고분자시스템공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이 학과 통합된 화학공학/고분자시스템공학부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1항 별표 1과 제52조 별표 5의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의학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일 현재 동 학위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위과정의 재적생으로 보며, 재적생의 교육수요가 종료할 때까지 관련 내규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유지한다.
- ③(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2조 별표6의 무역학과 수여학위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위명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소프트웨어대학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2항제2

호 국정전문대학원으로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 별표10의2 개정 학칙 중 경영대학원(IMBA) 이수학점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 통합,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건축토목공학부 및 조경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건설환경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하거나, 2016학년도 이전 공학계열 입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학과 진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은 동 대학원 빅데이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이 학칙 시행당시 국정관리대학원 재적생은 국정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④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IMBA) 경영학과 재적생은 동 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일반대학원 학과협동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기술경영학과 및 인지과학협동과정·생명공학협동과정·지리정보체계협동과정은 2016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재적 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 동 학과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46조제1항제7호·제8호, 「교원인사규정」 별표, 「교원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내규」 별표에 국정관리대학원을 국정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 직무 중 ‘동문회 관리 및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제12조제1항제2호 비선형 에르고딕이론 연구소와 전자화물창의소재 연구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적



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 및 소프트웨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항 별표1의 학사과정 대학별 학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삭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분야 폐지 등에 따른 경과 조치) 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7년 3월 1일 현재 학사과정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계속해서 동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2020년 3월 1일 이후 동 대학 소프트웨어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전문대학원 MS in Finance 분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대학원 동 분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2조 별표6의 경영학과 수여학위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3월 1일 이전 입학자는 종전 학위명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2조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기관 개정 사항은 2016년 6월 1일부터, 동조 인문학연구원 및 공학연구원 산하기관 개정사항은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 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

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2항 별표10의2의 중국대학원 이수학점 및 제52조 별표7의 경영전문대학원 EMBA분야 수여학위명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3항의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대학원 학과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일반대학원 생명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해서 동 대학원 생명공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2017년 9월 1일 이후 동 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또는 융합생명공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개시일부터, 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신설사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지능정보융합원 신설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 중 차세대자동차융합연구소, 바이오로직스연구센터, 한중디지털경영연구소 신설사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융합화학연구소 신설 및 청정공기연구센터 명칭변경은 2017년 11월 1일부터, 화공융합기술연구소 명칭변경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사과정 생명공학대학 유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대학 융합생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하거나, 2017학년도 이전 자연과학계열 입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학과 진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제3조(분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정전문대학원 글로벌전자정부·정보정책분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지방행정역량강화분야 재적생으로 본다.
- 제4조(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신설 및 분야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학술연구분야 박사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대학원 법학과 학술연구분야 박사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으로의 재적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별표1) 학사과정 대학별 학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대 학	학 과	입 학 정 원
인 문 과 학 계 열	유 학 대 학	유 학 · 동 양 학 과	431명
	문 과 대 학	국 어 국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프 랑 스 어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러 시 아 어 문 학 과 한 문 학 과 사 학 과 철 학 과 문 헌 정 보 학 과	
글 로 벌 리 더 계 열		글 로 벌 리 더 학 부	80명
사 회 과 학 계 열	사 회 과 학 대 학	행 정 학 과 정 치 외 교 학 과 신 문 방 송 학 과 사 회 학 과 사 회 복 지 학 과 심 리 학 과 소 비 자 가 족 학 과 아 동 · 청 소 년 학 과	433명
	경 제 대 학	경 제 학 과 통 계 학 과	
글 로 벌 경 제 학 계 열		글 로 벌 경 제 학 과	100명
경 영 학 계 열	경 영 대 학	경 영 학 과	215명
글 로 벌 경 영 학 계 열		글 로 벌 경 영 학 과	120명
자 연 과 학 계 열	자 연 과 학 대 학	생 명 과 학 과 수 학 과 물 리 학 과 화 학 과	326명
	생 명 공 학 대 학	식 품 생 명 공 학 과 바 이 오 메 카 트 로 닉 스 학과 융 합 생 명 공 학 과	





모집단위	대학	학과	입학정원
반도체계열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별도정원
전자전기공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203명
소프트웨어계열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50명
공학계열	공과대학	화학공학 / 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나노공학	706명
건축학계열		건축학과	41명
사범계열	사범대학	교육학과	35명
		한문교육과	35명
		수학교육과	35명
		컴퓨터교육과	35명
예·체능계열	예술대학	미술학과	37명
		디자인학과	38명
		무용학과	37명
		영상학과	37명
		연기예술학과	29명
		의상학과	36명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74명
의·약학계열	약학대학	약학과	65명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40명
글로벌바이오 메디컬공학계열	성균융합원	글로벌바이오메디컬 공학	30명
합계			3,368명





계 열		석사 학위 과정 학과	박사 학위 과정 학과
공	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휴먼 I C T 융합학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건축축적학과 조경학과 산업공학 나노과학기술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미래도시융합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A I . 로봇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 D M C 공학과 *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 스마트발전공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건축축적학과 조경학과 산업공학 나노과학기술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미래도시융합공학과 - A I . 로봇학과 *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 D M C 공학과 - -
		*** 의학과 ** 융합의학과 ** 의료기기산업학과 *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디지털헬스학과	*** 의학과 ** 융합의학과 ** 의료기기산업학과 *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일반 학과		70개 학과	62개 학과
계약 학과		10개 학과	6개 학과
학과 간 동 정	인문과학	비교문화협동과정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비교문화협동과정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사회과학	보험계리학협동과정	-
	예·체능	예술학협동과정	예술학협동과정
	자연과학	물리·화학융합협동과정 바이오코스메틱스협동과정	물리·화학융합협동과정 바이오코스메틱스협동과정
	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협동과정 태양광시스템공학협동과정 메카트로닉스공학협동과정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서비스융합디자인협동과정 융복합소재엔지니어링협동과정	- 태양광시스템공학협동과정 - 방재안전공학협동과정 서비스융합디자인협동과정 융복합소재엔지니어링협동과정
		12개 학과간협동과정	9개 학과간협동과정
총 정 원		1,124명	758명

\* 표시는 계약학과로서, 정원이 따로 있음.

\*\* 표시는 동일명칭으로 일반학과와 계약학과를 모두 운영하는 학과로 계약학과의 정원이 따로 있음.

\*\*\* 의학과 학위과정별 정원: 석사 100명, 박사 80명



(별표3) 전문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

대학원	학과	과정	분야	입학정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위과정	MBA Global MBA **EMBA **Executive MBA Professional MBA MS in Management Studies	300명
	*보험금융학과	석사 학위과정	-	별도 정원
	*금융학과	석사 학위과정	-	별도 정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과정	학술연구 직·전문 국·정·리 공·관·리·정 지·방·행·정·역·량·강·화	35명
		박사 학위과정	학술연구	35명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학위과정	-	35명
		박사 학위과정	학술연구	15명
중대국학원	**중국경제 관리학과	석사 학위과정	중·국·경·영 중·국·금·용 중·국·마·케·팅 중·국·창·업·전·략	40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과정	-	120명
		박사 학위과정	전·문·연·구	40명
수자원전문대학원	수자원과	석사 학위과정	학·술·연·구 전·문·연·구	20명
		박사 학위과정	학·술·연·구	10명
정원				650명

\* 표시는 계약학과로서, 정원이 따로 있음.

\*\* 표시는 동일명칭으로 일반학과와 계약학과를 모두 운영하는 학과로 계약학과의 정원이 따로 있음.



(별표4) 특수대학원 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

대학원	학과	전공	입학정원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문화학과	유교경전·한국사상	30명
		서예학·동양미술학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	60명
		영어교육	
		수학교육	
		중국어교육	
국가전략대학원	국가전략학과		25명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매체학	48명
		광고홍보학	
		문화컨텐츠	
정보통신대학원	빅데이터학과		75명
	정보보호학과		
	IT컨설팅학과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	32명
		디자인매니지먼트	
		패션학	
건축도시디자인학과			
번역·테솔(TESOL)대학원	번역학과		40명
	테솔(TESOL)학과		
생활과학대학원		생활예절·다도	24명
		보육경영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60명
		사회복지실천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과		20명
	보건·사회약학과		
임상간호대학원	임상간호행정학과		40명
	임상간호학과		
경영대학원(IMBA)	글로벌경영학과		200명
문화융합대학원	문화융합학과	문화예술경영	50명
		엔터테인먼트경영	
		도시공간문화	
		유네스코국제문화정책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보험연금학과		15명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창업학	30명
		창업컨설팅	
정원			749명





대학	학과	학위명
공과대학	화학공학 / 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나노공학과	공학사/*공학사(화학공학심화) 공학사/*공학사(신소재공학심화) 공학사/*공학사(기계공학심화) 공학사/*공학사(건축공학심화 / 토목공학심화) / 조경학사 건축학사 공학사/*공학사(시스템경영공학심화) 공학사/*공학사(나노공학심화)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문학사 학사 이학사 이학사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융합생명공학과 생명공학연계전공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학과	체육학사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예술대학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무용학과 영상학과 연기예술학과 의상학과	미술학사 디자인학사 무용학사 영상학사 연기예술학사 의상학사
성균융합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에너지과학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공학사 이학사 / 공학사 문학사 / 이학사 / 공학사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전공	문학사

\* 표시는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에 따른 학사학위명임.







계 열		학 과	석 사 학 위 명	박 사 학 위 명
자 연 과 학		생 명 과 학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수 리 학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물 리 학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에 너 지 과 학	이 학 석 사 / 공 학 석 사	이 학 박 사 / 공 학 박 사
		약 학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제 약 산 업 학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식 품 생 명 공 학	이 학 석 사	이 학 석 사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융 합 생 수 사 학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과 학	과 학 석 사	과 학 석 사
공 학		전 자 전 기 컴 퓨 터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휴 먼 I C T 용 합 학	공 학 석 사	-
		화 학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고 분 자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신 소 재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인 시 계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건 설 환 경 시 스템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건 축 학	건 축 학 석 사	건 축 학 박 사
		조 경 학	조 경 학 석 사	조 경 학 박 사
		산 업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나 노 과 학 기 술 학	이 학 석 사 / 공 학 석 사	이 학 박 사 / 공 학 박 사
		글 로 벌 바이오 메 디 칼 공 학	이 학 석 사 / 공 학 석 사	이 학 박 사 / 공 학 박 사
		미 래 도 시 용 합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데 이 터 사 이 언 스 용 합 학	이 학 석 사 / 공 학 석 사	-
		A I . 로 봇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반 도 체 디 스 플 레 이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프 트 웨 어 플 랫 폼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D M C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스 마 트 팩 토 리 용 합 학	공 학 석 사	-	
	스 마 트 발 전 공 학	공 학 석 사	-	
의 학		의 학 과 학	의 학 석 사 / 이 학 석 사	의 학 박 사 / 이 학 박 사
		융 합 의 과 학	이 학 석 사 / 공 학 석 사	이 학 박 사 / 공 학 박 사
		의 료 기 기 산 업 학	의 과 학 석 사	의 과 학 박 사
		임 상 연 구 설 계 평 가 학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학 과 간 협 동 과 정	인 과 문 학	비 교 문 화 역	문 화 학 석 사	문 화 학 박 사
	사 회 학	한 문 고 전 번 역	문 학 석 사 / 번 역 학 석 사	문 학 박 사 / 번 역 학 박 사
	사 회 학	보 험 계 리 학	보 험 계 리 학 석 사 / 이 학 석 사	-
	예 · 체 능	예 술 학	예 술 학 석 사	예 술 학 박 사
	자 연 학	물 리 · 화 학 용 합 스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공 학		에 너 지 시 스템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태 양 광 시 스템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방 쉴 카 트 로 닉 스 공 학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서 비 스 용 합 디 자 인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융 합 소 재 엔 지 니 어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별표7) 전문대학원 수여학위명

대학원	학과	과정	분야	학위명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과정	MBA	경영학석사(MBA)
			Global MBA	경영학석사(MBA)
			EMBA	경영학석사(EMBA) 경영학석사(EMBA Management) 경영학석사(EMBA ICT and Data Analytics) 경영학석사(EMBA Marketing) 경영학석사(EMBA Accounting) 경영학석사(EMBA Finance)
			Executive MBA	경영학석사(MBA)
			Professional MBA	경영학석사(MBA)
			MS in Management Studies	경영학석사
			보험금융학과	석사학위과정
금융학과	석사학위과정	-	경영학석사(금융)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술연구	행정학석사
			공직·전문직	행정학석사(국정관리/행정관리/정책학/도시및지방/공기업/NGO/전자정부/문화예술/분쟁협상/부동산학/정보정책)
			국정리더	
			글로벌전자정부·정보정책	
			공공관리·정책학	행정학석사(공공관리및공공정책)
		지방행정역량강화	행정학석사(지방행정)	
박사학위과정	학술연구	행정학박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학위과정	-	기술경영학석사(기술경영학)
		박사학위과정	학술연구	기술경영학박사
중국대학원	중국경제관리학과	석사학위과정	중국경영	중국학석사(중국경영)
			중국금융	중국학석사(중국금융)
			중국마케팅	중국학석사(중국마케팅)
			중국창업·전략	중국학석사(중국창업·전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	법학석사(J.D.)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	법학박사(S.J.D.)
			학술연구	법학박사
수자원전문대학원	수자원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술연구	공학석사
			전문연구	공학석사(수자원) 공학석사(수환경)
		박사학위과정	학술연구	공학박사



(별표8) 특수대학원 수여학위명

대학원별	학과	전공	학위명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문화학과	유교경전·한국사상	문학석사(유교경전·한국사상)
		서예학·동양미학	문학석사(서예학·동양미학)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	교육학석사(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수학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중국어교육	교육학석사(중국어교육)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상담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국가전략대학원	국가전략학과	-	정치학석사(국가경영/국가정보/외교안보) 경제학석사(국가경영/국가정보)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매체학	언론학석사(언론매체)
		광고홍보학	언론학석사(광고홍보)
		문화컨텐츠	언론학석사(문화컨텐츠)
정보통신대학원	빅데이터학과	-	공학석사(빅데이터학)
	정보보호학과		공학석사(정보보호학)
	IT컨설팅학과		공학석사(IT컨설팅학)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	디자인학석사(환경디자인)
		디자인매니지먼트	디자인학석사(디자인매니지먼트)
		패션학	패션학석사(패션학)
	건축도시디자인학과	-	디자인학석사(건축도시디자인)
번역·테솔(TESOL)대학원	번역학과	-	문학석사(번역학)
	테솔(TESOL)학과		문학석사(TESOL)
생활과학대학원	-	생활예절·다도	예다학(禮茶學)석사(생활예절·다도)
		보육경영	보육학석사(보육경영)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실천)
임상약대학원	임상약학과	-	약학석사(임상약학)
	보건·사회약학과		약학석사(사회약학)
임상간호대학원	임상간호행정학과	-	간호학석사(임상간호행정)
	임상간호학과		간호학석사(임상간호)
경영대학원(IMBA)	글로벌경영학과	-	경영학석사(글로벌경영학)
문화융합대학원	문화융합학과	문화예술경영	문화융합학석사(문화예술경영)
		엔터테인먼트경영	문화융합학석사(엔터테인먼트경영)
		도시공간문화	문화융합학석사(도시공간문화)
		유네스코국제문화정책	문화융합학석사(유네스코국제문화정책)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보험연금학과	-	금융학석사(보험/연금)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창업학	창업학석사(창업학)
		창업컨설턴트	창업학석사(창업컨설턴트)



(별표9) 학점별 등록금 징수기준

구 분	수 강 학 점	징 수 금 액
학사학위과정	1학점 ~ 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 ~ 6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 ~ 9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석사학위과정 이상	1학점 ~ 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4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별표9-2)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학생, 재학생)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계절수업 및 대학원 집중과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은 따로 정함.

※ 등록금은 장학금이 있을 경우 감면된 후의 금액으로 함.

(별표10) 학사과정 학년수로 인정 학점

대학 학년	등록 학기수	학부대학 유학대학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생명공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예술대학 성균융합원	공과대학 (건축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 과 대 학	
							의 예 과	의 학 과
제1학년	2학기 이상	30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32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제2학년	4학기 이상	60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81학점 이상	88학점 이상
제3학년	6학기 이상	90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04학점 이상		132학점 이상
제4학년	8학기 이상	12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43학점 이상		173학점 이상
제5학년	10학기 이상			(160학점 이상)		182학점 이상		
제6학년	12학기 이상					219학점 이상		

※ 학칙 제40조(학사과정의 졸업), 학칙시행세칙 제43조(조기졸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기졸업자는 등록학기수에 관계없이 수료를 인정함.



(별표10의2) 각 대학원별 이수학점표

대 학 원		전공과목	선택과목	계	
일 반	석 사 과 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박 사 과 정	18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36학점	
	석 · 박 사 통 합 과 정	인 문 계 열 / 예 체 능 계 열	30학점 이상	27학점 이하	57학점
		사 회 계 열 / 자 연 과 학 계 열 / 공 학 계 열 / 의 학 계 열	30학점 이상	21학점 이하	51학점
전 문	경 영 전 문	석 과 사 정	MBA	45학점	45학점
			Global MBA	45학점	45학점
			EMBA	45학점	45학점
			Executive MBA	45학점	45학점
			Professional MBA	45학점	45학점
			보 험 금 융 학 과	45학점	45학점
			금 융 학 과	45학점	45학점
	MS in Management Studies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국 정 전 문	석 사 과 정	24학점 이상	9학점 이하	33학점
		박 사 과 정	27학점 이상	9학점 이하	36학점
		석 · 박 사 통 합 과 정	42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60학점
	기술경영전문	석 사 과 정	27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45학점
		박 사 과 정	21학점 이상	15학점 이하	36학점
	중 국	석 과 사 정	중 국 경 영	36학점	36학점
			중 국 금 융		
			중 국 마 케 팅		
			중 국 창 업 · 전 략		
	법 학 전 문	석 사 과 정	90학점		90학점
		박 사 과 정	전 문 연 구	36학점	36학점
			학 술 연 구	173학점	18학점 이하
	의 학 전 문	석 사 과 정	206학점		173학점
복 합 학 위 과 정		24학점 이상		206학점	
수 자 원 전 문	석 사 과 정	학 술 연 구	24학점 이상	6학점 이하	30학점
		전 문 연 구	24학점 이상	9학점 이하	33학점
	박 사 과 정	36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36학점	
	석 박 사 통 합 과 정	18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54학점	
특 수	유 학	석 사 과 정	20학점 이상	6학점 이하	24학점
	교 육	석 사 과 정	12학점 이상	교직과목 4학점 이상	24학점
	국 가 전 략	석 사 과 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언 론 정 보	석 사 과 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정 보 통 신	석 사 과 정	18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디 자 인	석 사 과 정	18학점 이상	6학점 이하	24학점
	번 역 · 테 솔(TESOL)	석 사 과 정	18학점 이상	6학점 이하	24학점
	생 활 과 학	석 사 과 정	16학점 이상	6학점 이하	24학점
	사 회 복 지	석 사 과 정	24학점	8학점 이하	24학점
	임 상 약 학	석 사 과 정	24학점		24학점
	임 상 간 호	석 사 과 정	45학점		24학점
	경 영(IMBA)	석 사 과 정	12학점 이상		36학점
	문 화 융 합	석 사 과 정	18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글 로 벌 보 험 · 연 금	석 사 과 정	24학점	6학점 이하	24학점
	글 로 벌 창 업	석 사 과 정	24학점		24학점

※ 선택과목 : 타 학과 · 타 대학원 과목



<별지 제1호 서식> 학사과정 학위증서

증서번호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사 학위를 수여함.

학 과 ( 전 공 ) 및 학 위 명 : ○○ 학 과 ( 전 공 ), ○○ 학 사  
○○ 학 과 ( 전 공 ), ○○○ 학 사  
○○ 학 과 ( 전 공 ), ○○ 학 사

년      월      일

성 균 관 대 학 교 총 장(학 위)      ○      ○      ○ (인)

학위번호 : 성균관대 ○○○○(학) ○○○○



〈별지 제2호 서식〉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과정 학위증서

증서번호	학점제	호
<h1 style="margin: 0;">학      위      증</h1>		
<span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20px;">○</span> <span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20px;">○</span> <span style="font-size: 2em;">○</span>		
<span style="font-size: 1.5em; margin-right: 20px;">년</span> <span style="font-size: 1.5em; margin-right: 20px;">월</span> <span style="font-size: 1.5em;">일</span>		
<p>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학 과 (전 공) 및 학 위 명 : ○ ○ 학 과 (전 공), ○ ○ 학 사</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font-size: 1.5em; margin-right: 20px;">년</span> <span style="font-size: 1.5em; margin-right: 20px;">월</span> <span style="font-size: 1.5em;">일</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성균관대학교    총 장 (학위)    ○ ○ ○ (인)</p>		
<p>학위번호 : 성균관대-학점-○○○○-○○○○</p>		



<별지 제3호 서식>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증서번호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통과되었으므로 석사의 자격을 인정함.

학 위 명 : ○ ○ 석 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성균관대학교 총 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성균관대○○○○(석)○○○





◁별지 제4호 서식> 전문대학원 학위기

증서번호 석(박)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었으므로 석사(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학 위 명 : ○ ○ 석 사(박 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성균관대학교 총 장 (학위) ○○○ (인)

학위번호 : 성균관대○○○○(석)/(박)○○○



<별지 제5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

증서번호 석제 호

#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대학원 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하였으므로 석사의 자격을 인정함.

학 위 명 : ○ ○ 석 사

성균관대학교 ○ ○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성 균 관 대 학 교 총 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성균관대○○○○(석)○○○



〈별지 제6호 서식〉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

증서번호 박제 호

#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통과되었으므로 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학 위 명 : ○ ○ ○ 박 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성균관대학교 총 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성균관대○○○○(박)○○○



<별지 제7호 서식> 일반대학원 명예박사 학위기

명박제 호

## 학 위 기

국 적 :

○ ○ ○

년 월 일생

위 분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성균관대학교 총 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 성균관대 ○ ○ ○ ○ (명박) ○ ○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별지 제10호 서식> 대학원과정 연구실적증명서

제 호

# 증명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 대학원 ○○ 학과(                    전공)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성균관대학교 ○○ 대학원장 (학위) ○○○ (인)



## 2. 성균관대학교학칙 시행세칙(학사과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학사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계열입학학생의 학과진입)** ①2개 이상의 학과가 설치된 대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계열에 설치된 학과 중 하나의 학과에 진입하게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학과진입 대상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지망학과별로 순위를 정하여 학과진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학과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시간제등록생)** ①시간제등록생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허용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다른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시간제등록생이 될 수 없다.

**제3조의2(시간제등록생의 학점취득 등)** ①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당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절차 및 수업운영, 등록금 반환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3(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에게는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성균인성 교양 기초과목 30학점이상, 전공과목 45학점이상, 총 85학점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시 요구되는 140학점 이상(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

3. 「학칙」 제52조에서 정한 학점은행제에 따른 본교 학사학위 수여가능 전공을 이수한 자

**제3조의4(시간제등록생의 학위수여절차)** ①「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학사학위 신청서와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서를 본교 학위수여예정일 1개월 전 소정 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3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한다.

③총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본교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조(군위탁 편입학생)** ①군위탁 편입학생(“군위탁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군위탁생은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으로 편입학하며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

③군위탁생의 편입학 시기, 학점인정,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 등은 일반편입학생에 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5조(모집단위간 이동)** ①모집단위간 이동(이하 “전과”라 한다)은 총장이 교무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대학의 공통핵심역량인 '성균핵심역량'에 따라 편성하며, '성균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통역량
2. 인문역량
3. 학문역량
4. 글로벌역량
5. 창의역량
6. 리더역량
7. 소프트웨어역량

**제6조의2(교과목의 구분)** ①교과목은 성균인성 교양 기초 과목,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1. 성균인성 교양 기초과목은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성균인성 과목, 성균핵심역량의 기본이 되는 소통 창의 소프트웨어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중점교양 과목,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균형 잡힌 안목을 함양하는 균형교양 과목, 전공과정 이수에 필요한 분야별 기초학업 과목들로 구성되며, 그 교육적 학문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성균인성영역		인성	
		리더십	
교양영역	중점교양영역	의사소통	
		창의와 소프트웨어	창의와사유
			소프트웨어기초
		글로벌	기본영어
	전문영어		
	글로벌문화		
균형교양영역	인간/문화의이해		
	사회/역사의이해		
	자연/과학/기술의이해		
기초영역		기초인문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2. 전공과목은 전공분야의 전문학술적 이론을 탐구 학습하는 과목과 이의 검증 및 체득을 위한 실험·실습·실기 과목들로 구성되며, 전자는 그 교육적·학문적 수준에 따라 전공핵심 과목과 전공일반 과목으로 구분된다.
3. 선택과목은 자격증 취득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수하는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군사학과목 과 교양, 전공에 속하지 않은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과정 표에 따른다.

**제7조(성균인성·교양·기초학점의 이수)** ①성균인성·교양·기초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지정된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의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해당 영역의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을 이수하는 자가 기초인문사회과학영역의 '교육학입문'을 이수할 경우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②「학칙」 제43조에 의한 편입학자, 제25조 3항의 모집단위 이동 학생 및 제20조에 의한 외국인 입학생의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전공학점의 이수)** ①전공학점은 학과별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핵심과목과 전공일반과목 및 실험실습과목을 각각 지정된 최소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표에 따라 복수전공자에게 지정된 전공핵심과목, 전공일반과목 및 실험실습과목을 각각 최소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선택학점의 이수)** ①선택학점은 학과별 수료학점에서 교육과정표에 따라 이수한 성균인성·교양·기초학점과 전공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선택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
2. 선택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학점(단,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은 제외)

**제9조의2(국제어수업 학점 이수)** ①「학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성균인성·교양·기초영역 6학점 이상, 전공영역 12학점 이상의 국제어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성균인성·교양·기초영역과 전공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하고, 편입학자는 성균인성·교양·기초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학문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공영역의 국제어수업 이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편입학자의 인정학점)**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한다.

②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삭제)**

**제17조(특별학점 취득)** ①우수학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목에 대해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점취득대상 과목은 학부대학장이 따로 정하며, 해당과목의 학점은 1학년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특별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6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대학원교과목 수강)** ①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6학점(전문대학원 학술연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학생은 9학점)까지 대학원 석박공통과목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각각 인정한다.

1. 학사과정 전공학점(전공일반)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 학사학위 취득 직후학기에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경우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②대학원교과목 중 학석공통과목은 수강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고, 학점 취득시 학사과정 전공학점(전공일반)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학사과정 학생이 취득한 대학원과목은 성적증명서

에 대학원개설과목임을 표기한다.

**제18조의2(학석사연계과정)** ①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학석사연계과정생은 학사과정 학과장 및 진학희망 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서 진학 희망 대학원 소속 학장이 선발한다.

③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④삭제**

**제1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소속 학장의 지도를 받아 단말기를 통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편입학생·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수강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③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업과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사경고를 한다.

④「학칙」 제20조에 의해 학과로 입학한 외국인 중 수능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및 추가)**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초 소정기간(통상 개강 후 1주차) 내에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변경, 추가하여야 한다. 위 기간 경과 후 폐반·분반·합반 또는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의2(수강철회)** ①수강 중인 과목을 학기 중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소정기간(통상 개강 후 4주차) 내에 2과목까지 학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다.

②수강철회 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시한다.

**제22조(교과목의 재수강)** ①기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





이 C+~F인 과목은 최초 수강후 4학기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며, 학기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②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취득 성적은 재수강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취소된다. 다만, 재수강 성적이 과락(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③재수강으로 기취득한 성적이 취소되어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에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9조에 정한 수료요건 충족에 필요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이 F등급일 경우에는 재수강 가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성적평가)** ①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A)은 30퍼센트 이내이며, A등급(A+·A)과 B등급(B+·B)의 합은 65퍼센트 이내로 한다. 그러나 전공일반과목의 경우는 A등급은 4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생과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은 이 수강인원과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 대학장이 인정하는 국제어수업 과목, 교직과목, 군사학, 실험실습과목, 실기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약학대학·의과대학의 전공과목, 군위탁생과목, 수준별 교육에 의한 고급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개설된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이 경우에도 A등급은 5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90퍼센트 이내로 함)

2. 교육실습·현장실습 교과목과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학습 교과목
3. Flipped Class 운영 강좌
- ③학장은 전공과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성적의 공시 등)**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중간고사 및 학기말시험 후 소정기간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③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④출석부는 3년간, 과제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자료는 10년간 교과목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성적의 취소와 경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학장이 이를 취소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착 제
3. 착 제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5.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주어지진 성적(교육실습성적은 제외)
6. 착 제
7. 착 제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 성적의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2.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시험 부정행위로 4주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③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목개설 주관 학장에게 성적 정정을 청원하여 허가된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성적정정을 허가한 과목개설 주관 학장은 그 사실을 학생소속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학점포기)** ①7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이 학수번호의 변경, 교과목의 폐지, 기타 사유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학점포기는 학기초 소정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학 중 통산 2과목까지 할 수 있다.

③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해당 성적을 삭제하여 'W'로 표시하고, 제16조 수업연한의 최종 학년 진급시 삭제하며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6조(성적 평점평균의 산출)** 성적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학칙」 제39조제1항 및 이 세칙 제42조와 제43조에 규정한 졸업에 필요한 평점평균은 평점합계를 취득학점합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한다.

**제27조(일반휴학)** ①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단, 당 학기 신입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에 한함.

②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선이내로 한다.

1.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
2. 증빙서류(제1항 제2호의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개강일로부터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1통
- ③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학칙」 제28조제2

항에 따라 반환한다.

④등록금분할납부자는 제27조 제1항 또는 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하여 휴학을 하여야 할 경우 미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할 수 있다.

**제28조(입대휴학)** ①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입대휴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연장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다.

**제28조의2(임산출산육아휴학)** ①임산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진단서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4분의 3 선이내로 한다.

②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다.

③임산출산육아휴학은 재학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의3(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사전심사 결과,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창업휴학은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 ①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하는 재학생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입대휴학자 인정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입대휴학자 인정학점을 신청한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30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3조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입대휴학자의 복학)** ①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기간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자는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③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휴학 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제32조(등록금의 반환 등)** ①제27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31조제4항에 의한 입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등록금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제적처리하며, 해당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제적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33조(재입학 허용범위 및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

다. 다만, 「학칙」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사경고 제적자, 「학칙」 제61조에 의한 징계제적자 및 제적 후 10년 이상 경과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별도의 재입학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③학장은 학생지도상 필요한 경우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의한 학년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재입학 심사)** ①재입학 심사는 소속 학장과 학장이 위촉한 2인의 전임교원이 이를 행한다.

②재입학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35조(재입학의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휴학만기 제적자 및 「학칙」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유급)** ①유급은 학년 단위로 한다. 단, 「학칙」 제50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유급하는 경우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②「학칙」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유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유급원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급한 자는 다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37조(복수전공 신청절차 등)** ①「학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수전공이수(변경)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복수전공 이수(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복수전공 이수학점)** ①복수전공 이수자의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이수는 제1전공 학과의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이수에 따른다.

②복수전공을 하는 자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이내에서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이수 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③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소속 학과와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모두 편성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전공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④복수전공 이수 신청 전에 선택학점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복수전공의 제한)** ①약학대학 및 의과대학을 복수전공 할 수 없으며, 사범대학 각 학과는 사범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할 수 있다.

②<삭제>

③복수전공 희망자가 특정 전공에 집중될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리더학부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계절수업)** ①계절수업(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를 포함한다)은 매학기 종강 후 방학동안 단기집중 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절수업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각 계절수업당 6학점 이내, 연간 총 9학점 이내로 하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프로그램의 경우 각 계절수업당 수강학점 또는 연간 총수강학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수강신청 인원이 19명 이하인 과목은 폐반한다.

⑤계절수업의 취득성적은 졸업·전공배정·복수전공 배정 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전과·학사경고·유급·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⑥계절수업의 성적평가는 이 세칙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학적부의 성적표시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40조의2(집중과정)** ①대학 또는 학과(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여름방학 기간 중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집중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③집중과정 수강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며, 집중과정

의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은 각각 해당 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 이수학점, 취득성적으로 한다.

④집중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1조(삭제)**

**제42조(졸업성적)** 「학칙」 제39조 및 제40조의 졸업에 필 요한 성적 평점평균은 2.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체육특기자 및 외국인학생(국적기준)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한다.

**제43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초(제6학기 초 또는 제7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조기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기졸업신청 자격은 제5학기 또는 제6학기까지의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신청 자격은 3.50 이상으로 한다.

③조기졸업신청자로서 「학칙」 제40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성적 총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인정은 「학칙」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적총점평균평점이 3.50이상인 자 가운데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원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대학원 교과목을 6 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대학원 제1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자

**제44조(졸업평가)** ①졸업평가는 연구논문·실험실습보고서·실기발표·종합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②졸업평가 유형, 평가시기, 평가절차, 평가기준, 평가유효기간 등 졸업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졸업평가에 불합격하고 다른 졸업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졸업평가에 다시 응하여 합격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 시기는 합격학기 졸업일로 한다.

**제45조(3품인증)** ①「학칙」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3품은 다음과 같다.

1. 인성품
2. 국제품
3. 창의품

② 삭제

③3품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졸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료처리하고 수료학기 종료 이후 3품 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시기는 3품인증 취득학기 졸업일로 한다.

④3품인증의 각 분야별 취득기준, 적용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학적부 기재사항)** ①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학적변동·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②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첨부)을 재적생은 학장에게, 졸업생 및 제적생은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49조(제증명 발급)** ①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졸업·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국문)
8. 3품인증증명서(국문)
9. 기타 증명서

②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유학생 체류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증명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50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도신설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제45조의 한국어시험은 1996학년도이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세칙 시행과 동시에 “시간제학생등록시행에관한내규”와 “군위탁편입생에관한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1.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개정세칙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일이전에 입대후학 한 학생이 제대 후 복학할 경우에는 2002학년도까지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2. 1999학년도이전 입학자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 세칙에 따라 부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제35조의 개정세칙은 2000학년도 제1학기 제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0학년도이전 입학자는 별도로 정한 교육과정 이수 지침을 적용한다.
2. 제42조, 제43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1학



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00학년도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 인문과학계열 및 사회과학계열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제3조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 이전에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위를 본교에서 수여 받을 목적으로 학습을 시작한 학습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학부내규가 제정된 학부에 대하여는 이 세칙 제23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7조, 제42조 및 제49조의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교과목의 재수강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2004

학년도 이전 취득한 교과목은 매학기 2과목 이내에서 학부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 내에 학점포기원을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점포기가 허가된 과목은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성적증명서에는 'W'로 표시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학점포기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2004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학기당 2과목 이내에서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제7학기부터는 2004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과 2005년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2과목 이내(2005년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포기는 재학중 통산 2과목 이내)에서 포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3조의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2조의 F등급과목 재수강 적용은 2012년 1학기 이후에 수강하여 받은 F등급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7조 2항의 개정세칙은 2012학년도 이전 학사 편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제4항의 개정 세칙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전공영역 국제어수업의 무학점 12학점 이상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신청서서식

<b>학 사 학 위 신 청 서</b>								
<b>신 청 인</b>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 공							
	주 소		(전화)					
<b>학 점 취 득 사 항</b>	총 학 점		교양과목 학점		전공과목 학점		일반선택과목 학 점	
	전체	본교 취득 학점	전체	본교 취득 학점	전체	본교 취득 학점	전체	본교 취득 학점
<p>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학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사학위를 신청합니다.</p> <p>첨부 : 학점인정증명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성균관대학교 총장 귀하</p>								





### 3. 성균관대학교학칙 시행세칙(대학원과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동과정 참여학과)** 일반대학원에 설치된 협동과정 참여학과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박사학위과정의 전공)** ①박사학위과정 각 학과 학생의 전공은 교과목이수상황, 학위논문주제 및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장이 결정한다.  
②전공결정에 필요한 전공의 종류와 전공의 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 제 2 장 학사운영

##### 제 1 절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 제4조(입학)** ①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②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입학자격)** ①「학칙」 제18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본교와 학·연·산협동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6조(편입학자격)** ①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수학과와 취득학점 등은 따로 정한다.  
②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재입학의 절차)**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서식)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의한 학기조정과 재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재입학의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휴학만기 제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절 휴학·복학·등록금 반환

- 제9조(일반휴학)** ①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②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선 이내로 한다.  
1.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  
2. 증빙서류(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당학기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한하여 제출)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개강일로부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3차의료급여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1통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③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④등록금분할납부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 제



10조의2에 의하여 휴학을 하여야 할 경우 미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대휴학)** ①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입대휴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처리한다.

**제10조의2(임신출산육아휴학)** ①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진단서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4분의 3선이내로 한다.

②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다.

③임신출산육아휴학은 재학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3(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과 사전심사 결과, 창업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창업휴학은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 ①재학생이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 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입대휴학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학점인정 신청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소정 서식)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 경과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3조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입대휴학자의 복학)** ①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기간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휴학 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④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제13조의2(등록금의 반환)** ①제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13조제4항에 의한 입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학칙」 제28조제2항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등록금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제적처리하며, 해당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제적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 제 3 절 전과 및 전공의 변경

**제14조(일반대학원 전과)**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전과는 교



무연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전문대학원 분야 변경)** 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분야변경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특수대학원 전과)** ①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제외) 재학생으로서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초 3주 이내에 전과 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과한 자는 변경된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의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심사(학점인정)를 거쳐 인정된 학점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4 절 수강신청 및 연구등록

**제17조(수강신청)** ①재학생은 「학칙」에 규정된 학기당 수강학점 범위 안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수강신청 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업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법학전문대학원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의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특례)**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중인 과목의 학기 중 철회 또는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에서의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구등록)** ①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는 수료 직후 연속으로 4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4학기 경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한다.

②연구등록생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③연구등록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연구등록생의 수강신청,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 장 교육과정

#####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19조(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전공과목과 선택과목(교육대학원 교직과목 포함)으로 구분한다.

**제20조(학점의 이수)** ① 삭제

②각 대학원의 재학생은 해당학과(전공)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34조에 규정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정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3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6학점 이상 국제어수업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학문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어강의 이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선수학점)** ①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와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말하며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③ 삭제

**제22조(교육대학원 교직학점의 이수 및 논문학점 부여)** ①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직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범대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②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논문 6학점을 당해 학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특별학점 취득)** ①우수학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목에 대해 ‘학점취득 특별시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점취득대상 과목은 학장이 따로 정하며, 해당과목의 학점은 1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특별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7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2(집중과정)** ①대학원 또는 학과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방학기간동안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집중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 절 학점인정 및 수업연한 단축

**제26조(학위과정연계)**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여 대학원 석박공통과목(팀연구학점 포함)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학사과정 학위취득 직후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취득 학점을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점으로 6학점(전문대학원 학술연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학점인정)** ①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하는 등의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신입학생의 타대학원 취득성적은 일반대학원 9학점, 전문대학원 15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일반대학원 9학점·전문대학원 15학점·특수대학원 6학점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수업연한 단축)** ①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일반대학원 6학점 이상, 전문대학원 12학점(학술연구과정은 9학점) 이상, 특수대학원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또는 13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제25조의2 규정의 집중과정을 이수하여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3학기(특수대학원은 4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각각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학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제 3 절 시험과 성적

**제29조(성적유보)** ①성적평가자료가 성적표 제출 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Incomplete)”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강생중에 학사과정 학생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유보된 성적은 성적기록표 상에 “I”로 표시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일(1월말, 7월말)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정기일까지 성적평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F”로 처리한다.

**제30조(성적의 공시)**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출석부는 3년간, 과제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자료는 10년간 교과목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학장이 이를 취소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삭제
3. 삭제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5.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주어진 성적(교육실습성적은 제외)
6. 삭제
7. 삭제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 성적의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2.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시험 부정행위로 4주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③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목개설 주관 학장에게 성적 정정을 청원하여 허가된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성적정정을 허가한 과목개설 주관 학장은 그 사실을 학생소속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 제 1 절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자격시험

**제32조(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대상·자격·절차·시험과목·평가기준, 출제위원 선정 및 면제기준 등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 제 2 절 특수대학원 자격시험

제37조(삭제)

제38조(종합시험) 삭제

## 제 5 장 학위청구논문

### 제 1 절 학위청구논문지도

**제39조(학위청구논문 지도)** ①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의 선정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의 의사·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학장이 정한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교원, 석좌교원,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지도교수 선정시가절차, 변경, 복수지도교수, 지도교수 1인당 학생수 등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다만, 복수지도교수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속학과 명예교원,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나, 지도교수 1인은 반드시 소속 학과 전임교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학위논문예비심사)** ①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논문 예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석사과정에 한하여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정해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제 2 절 특수대학원 논문지도**

**제43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44조(삭제)**

**제 3 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45조(일반·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①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석사과정 심사신청 시 수료 학점 취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통 사항: 수료에 필요한 학기(인정학기 포함) 등록
2. 일반대학원: 수료학점(선수학점 포함, 박사과정은 33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면제). 다만,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가운데 입학 시 한국어능력을 인증 받지 않은 자는 논문심사 신청 시까지 소정의 한국어능력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인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3. 전문대학원: 소정의 학점(선수학점 포함, 학장이 내규로 정함)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이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3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면제)

4.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추가 사항: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이상 발표(논문게재증명서 포함)

②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6조(특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①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심사신청 시 수료학점 취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수료학점(선수학점 포함)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이상
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면제)
3.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④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범대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 ⑤학위논문 심사 및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47조 삭제**

**제48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학장은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전문대학원 학술석사과정 재학생의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을 대학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학점 추가 이수 또는 학위논문제출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1. 6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



- 2. 대학내규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
- ③학위논문제출 면제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 ④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 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49조(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①심사방법·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3인 이상
-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5인 이상
- 3. 삭제

⑤학위논문 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논문 : 심사위원의 2/3이상이 ‘합격’ 판정
- 2. 박사학위논문 : 심사위원의 4/5이상이 ‘합격’ 판정

#### 제50조 삭제

**제51조(학위논문 제출)** ①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유예한다.

- ②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을 때 제출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한다.
- ③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 합격을 취소한다.
- ④학위논문(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 제출, 인쇄물 제작, 학위논문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 제 6 장 학위수여

**제52조(석사학위 중 전문학위 수여방법의 특례)**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을 갖춘 자(기수료자 포함)가 추가로 다음 각 호중 1을 충족한 경우 학위논문 심사에 같음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1. 해당 전문·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
- 2. 추가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3.0이상(법학전문대학원은 2.3이상)인 자

**제53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장 연구과정·정원의학생·공개강좌

**제54조(연구과정)** ①연구과정은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대학원수업에 출석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연구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
- ④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해당대학원의 해당학위과정에 준하며 1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⑥연구과정의 수강신청요령,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 석사과정의 규정에 준한다.

**제55조(공개강좌)** ①대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 또는 전문적인 학식·기술의 습득



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수료중을 교부할 수 있다

③공개강좌의 개설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 장 위원회

### 제 1 절 일반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제56조(설치 및 구성) ①일반대학원 각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 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기능)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3.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58조(보고 및 승인)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사항 중 주요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

제59조(설치 및 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및 해당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제6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1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

제62조(설치 및 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기관으로 필요에 따라 대학원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3조(회의)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안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붙인다.

## 제 9 장 기타사항

제64조(학적부 기재사항) ①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학적변동·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②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첨부)을 재적생은 학장에게, 졸업생 및 제적생은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65조(제증명 발급)** ①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 증명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수료(예정)증명서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휴학증명서
7. 기타증명서

②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유학생 체류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대학원 종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종합시험자격 및 응시과목은 1999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2항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④국제통상대학원으로 명칭변경이전의 무역대학원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구 「학칙」에 의한 교과과정을 이수한다.
- ⑤(일반대학원 예비심사 및 논문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예비심사자격과 제49조제1항의 논문심사 횟수는 1999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세칙 시행과 동시에 「학원 산협동연구석·박사과정운영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③(적용례)
  1. 제8조의 개정세칙은 2000학년도 제1학기 제적자부터 적용한다.

2. 제23조의 개정세칙은 2000년1월1일 이후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3.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개정세칙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일이전에 입대휴학 한 학생이 제대 후 복학할 경우에는 2002학년도까지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42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0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5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학부내규가 제정된 학부에 대하여는 이 세칙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9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2조제2항의 중국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학칙중 제2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0조제1항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0조 별표4의 개정 규정 중 국정관리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8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0조 별표4의 개정 규정 중 경영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신입학자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9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20조 별표4의 개정 규정 중 중국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제21조 선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세칙은 2017  
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  
항, 제12조제2항,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별  
표 1 개정규정 중 바이오코스메틱스협동과정 참여학과  
관련 부분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일반대학원 협동과정별 참여학과

1. 학과간협동과정

캠퍼스	과정	협동과정명	참여학과
인문사회학	석사,박사	예술학	유, 한국철, 동양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프랑스어문, 독어독문, 러시아어문, 신문방송, 의상, 미술, 무용, 영상, 디자인
	석사,박사	비교문화	국어국문, 영어영문, 프랑스어문, 독어독문, 러시아어문, 한문, 철, 사, 법, 사회, 미술, 영상, 조경, 건축, 중어중문
	석사	보험계리학	통계, 수, 수학교육
	석사,박사	한문고전번역	유, 한국철, 동양철, 국어국문, 중어중문, 한문, 사, 문헌정보, 한문교육, 동아시아
자연학	석사	에너지시스템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 기계공, 화학공
	석사,박사	메카트로닉스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 기계공, 산업공
	석사,박사	물리·화학융합	물리, 화
	석사,박사	태양광시스템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 신소재공, 고분자공
	석사,박사	방재안전공학	건설환경시스템공, 전자전기컴퓨터공, 경제, 통계
	석사,박사	서비스융합디자인	기계공, 산업공, 소비자가족, 인터랙션사이언스
	석사,박사	융복합소재엔지니어링	고분자공, 신소재공
	석사,박사	바이오코스메틱스	융합생명공, 식품생명공, 화, 화학공, 약, 나노과학기술
	석사,박사	바이오코스메틱스	유전공, 식품생명공, 화, 화학공, 약, 나노과학기술

2. 삭제

(별표2) 삭제

(별표3) 삭제

(별표4) 삭제



## 4. 계약학과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학칙 제5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학과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 의 명칭·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계약학과 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②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 은 당해 학년 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 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교육형 계약학과 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학칙 제6조에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계약학과 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며, 계약에 의하여 방학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계약학과 운영요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 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계약학과 의 설치·운영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 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한다.

②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8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등 납부)**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균관대학교학칙 및 동 시행세칙(학사과정·대학원), 당해 대학 학사내규, 교육부령(계약학과 운영요령)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융합형기계설계학과 관련 부분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기술경영학과는 2016년 2월 29일자로 폐지하되, 폐지일 현재 재적중인 학생은 계속하여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의 개정 규정 중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관련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계열/대학원	과정	명칭	정원(명)	학 위 명	비 고
반도체계열	학 사	반도체시스템공학과	50	공학사	채용조건형
사회과학계열	석 사	보험계리학과	20	보험계리학석사	재교육형
자연과학계열	석 사	계약산업학과	20	약학석사	재교육형
	박 사	계약산업학과	10	약학박사	재교육형
공학계열	석 사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70	공학석사	재교육형
		소프트웨어플랫폼학과	18	공학석사	재교육형
		D M C 공학과	40	공학석사	재교육형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15	공학석사	채용조건형
	박 사	스마트발전공학과	15	공학석사	재교육형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20	공학박사	재교육형
의학계열	석 사	D M C 공학과	10	공학박사	재교육형
		융합의과학과	30	이학석사/공학석사	재교육형
		의료기기산업학과	10	의과학석사	재교육형
	박 사	임상설계연구평가학과	10	이학석사	재교육형
		융합의과학과	30	이학박사/공학박사	재교육형
		의료기기산업학과	5	의과학박사	재교육형
경영전문대학원	석 사	임상설계연구평가학과	5	이학박사	재교육형
		보험금융학과	25	경영학석사(보험금융학)	재교육형
		Executive MBA	40	경영학석사(MBA)	재교육형
		EMBA	40	경영학석사(EMBA)	재교육형
중국대학원	석 사	금융학과	35	경영학석사(금융)	재교육형
		중국경제관리학과	10	중국학석사(중국경영) 중국학석사(중국경제)	재교육형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 사	기술경영학과	7	기술경영학석사	재교육형
	박 사	기술경영학과	3	기술경영학박사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 학사 50명, 석사 15명

\* 재교육형 : 석사 390명, 박사 83명





## 5.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부 : 사범대학 학생 교직과목 이수요령)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교직과정 설치학과(학부)(이하 “학과(학부)”라 한다)의 학생이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교직과정의 교육목표는 수기치인의 유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하여 교육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기를 연마하고 자·덕·체를 원만하게 갖춘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있다.

**제3조(교직과정 이수과목)**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교직과정 이수과목 표”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자는 제2학년제2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직과정지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이하 “교직과정생”이라 한다)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중에서 제2학년 제2학기말에 선정하며, 선정방법은 제3조의 “교직과정지원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서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이수학점)** ①교직과정생은 별표 1의 “교직과정 이수 과목 표”에 따라 영역별 해당교과목(2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교직과정생은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전공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과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 교직과정생 및 사범대학생은 전체학년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성적평균이 75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기본이수영역)** ①교직과정생은 제1전공의 전공과목 중에서 별표 2에 규정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공업계 교직과정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외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학과(전공) 및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및 동 학과(전공)의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교직부전공 이수) 삭제**

**제10조(교직복수전공 이수)** ①교직복수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하고, 교직복수전공 승인인원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교직과정생은 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없다.

②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직복수전공 이수는 동일 교사자격 종목 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과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교육과정 이수)** ①연계교육과정은 교직과정생이 제1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다른 표시과목(공통사회, 도덕·윤리, 공통과학)의 교원자격을 복수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문과대학 사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교직과정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 표”에 따라 해당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연계교육과정 이수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과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 교육영역(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중등학교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유치원정교사(2급)(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학년제2학기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삭제)**

**제14조(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에 2회 이상 적격판정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83학년도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198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8조의2는 199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1. 이 개정내규는 시행이전의 문과대학 철학과 및 한문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의 교직과정생은 당해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년도부터 이 개정내규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야간강좌 경제학과 및 무역학과의 교직과정생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3. 1991학년도이전 입학생으로서 제2학년제1학기에

수강지원서를 이미 제출하고 제2학기에 휴학한 학생도 제2학년제2학기에 복학할 경우 교직과정수강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이수영역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표시과목이 ‘상업’인 경영학과(주야)·무역학과 및 회계학과(야)의 기본이수영역 중 ‘상업계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산업디자인학과 및 농업경제학과의 기본이수영역은 199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1. 이 내규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1995학년도이전 입학생으로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또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내규는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제3조의 규정은 ‘97학년도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개정)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2조제2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서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으로 한다.
- ③(적용례)



1.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내규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9조 1항과 제10조1항의 승인인원 관련 개정 규정은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2007학년도이전 입학자로서 교직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내규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내규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내규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의 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모든 교원자격 취득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 15조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2017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7년 2월 졸업생은 1회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 교직과정 이수과목표

영역	교과목명	1		2		3		4		계
		1	2	1	2	1	2	1	2	
교 직 이 론	교 육 학 개 론		2							12 (백6 과목)
	교 육 철 학 및 교 육 사				2					
	교 육 사 회							2		
	교 육 심 리			2						
	교 육 과 정					2				
	교 육 평 가						2			
	교 육 방 법 및 교 육 공 학						2			
교 육 행 정 및 교 육 경 영								2		
교 직 소 양	특 수 교 육 학 개 론					2				6
	교 직 실 실 무						2			
	학 교 폭 려 예 방 및 학 생 의 이 해						2			
교 육 실 습	교 육 실 실 습							2		4
	교 육 봉 사 활 동								2	
소 계										22

(별표 2)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대학	학과(학부)	설치 년도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1969	도덕 · 윤리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 윤리사상, 윤리교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 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 학(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 중 각 분 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1964	국 어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 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영어영문학	1964	영 어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 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 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프랑스어문학	1964	프랑스어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 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 스어발음연습	
	중어중문학	1964	중국어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 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대학	학과(학부)	설치 년도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문과대학	독어독문학	1964	독일어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러시아어문학	2000	러시아어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어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한문학	1991	한문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사학	1964	역사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문헌정보학	1964	사서교사 (2급)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1971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아동·청소년학	1984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경제대학	경제학	1964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통계학	1969	수학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경영대학	경영학	1964	상업정보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ERP개론, 유통정보개론, 무역학개론, 창업일반, 물류관리론, 경영과법, 회계실무, 정보보안, 정보통신윤리, 경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과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터 적용)</li> <li>[상업정보→ 상업]</li> </ul>



대학	학과(학부)	설치 년도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자연 과학 대 학	생 명 과 학	1964	생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수 학	1964	수학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물 리 학	1964	물리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 학	1964	화학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정보통신 대 학	전자전기공학	1967	전기 · 전자 · 통신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 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과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터 적용) [전기·전자통신 → 전자,전기,통신]</li> <li>컴퓨터공학과 교직폐지(2017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하지 않음)</li> </ul>
소프트웨어 대 학	컴퓨터공학				
공과 대학	화 학 공 학 / 고 분 자 공 학	1967	화공 · 섬유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연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과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터 적용) [화공·섬유 → 화공]</li> </ul>
	신 소 재 공 학	1967	기계 · 금속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CAM, 기계공학법(또는 NC가공), 정밀공학법(또는 일반 공작기계), 용접공학(또는 접합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 조선공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 공학(또는 자동차공학개론), 유압 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또는 기계재료), 금속조직학, 화학야금학(또는 물리 야금학), 금속강도학, 철강재료학, 금속세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방식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과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터 적용) [기계·금속 → 재료]</li> </ul>
	기 계 공 학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과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터 적용) [기계·금속 → 기계,재료]</li> </ul>	
	건 설 환 경 공 학	1971	건설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관측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토목계획	
생 명 공 학 대 학	바이오메카트로 닉 스 학	1981	농공	농업기계, 농업동력/농업동역학, 농산가공기계학, 농업시설, 농업수리/유체역학, 농업기계설계학, 농업정보	



대학	학과(학부)	설치 년도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스포츠과학 대학	스포츠과학	1988	체육	체육사, 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	
예술대학	미술학	1999	미술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디자인학	1999	디자인 · 공예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색채학, 그래픽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공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디스플레이,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유리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과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터 적용) [디자인공예 → 디자인, 공예]</li> </ul>
	연기예술학	2001	연극영화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 워크샵, 영화분석과비평	
	영상학	2005			



## 부 : 사범대학 학생 교직과목 이수요령

1. 사범대학 각 학과 학생은 별표 1의 “사범대학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과 학생은 별표 2의 전공과목으로 교직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단, 2011학년도 교육학과 신입생부터 교직과목 대체과목을 이수할 경우 해당 교직 학점수만큼 교육학과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사범대학 각 학과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 3과 같다.
3. (교직복수전공 이수)①사범대학 학생은 동일 교사자격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및 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있다. (199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②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50학점(사범대학 각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에는 5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교과목 7과목(21학점)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복수전공 승인인원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성적)사범대학생은 전체학년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성적평균이 75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 사범대학 교직과목 표

영역	교과목명	1		2		3		4		계
		1	2	1	2	1	2	1	2	
교 직 이 론	교 육 학 개 론	2								12 (택6과목)
	교 육 의 역 사 · 철 학 적 이 해			2						
	교 육 의 사 회 학 적 이 해							2		
	교 육 의 심 리 학 적 이 해			2						
	교 육 과 정					2				
	교 육 평 가						2			
	교 육 방 법 및 교 육 공 학						2			
교 육 행 정 및 교 육 경 영								2		
교 직 소 양	특 수 교 육 학 개 론					2				6
	교 직 실 무						2			
	학 교 폭 력 예 방 및 학 생 의 이 해						2			
교 육 실 습	교 육 실 습							2		4
	교 육 봉 사 활 동								2	
소 계										22

(별표 2) 교육학과 교직과목 대체인정 표

교 직 과 목		대체인정과목			비 고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교 육 의 역 사 · 철 학 적 이 해	2	전 공	한 국 교 육 사	3	
		전 공	교 육 철 학	3	
교 육 의 심 리 학 적 이 해	2	전 공	교 육 심 리 학	3	
교 육 과 정	2	전 공	교 육 과 정	3	
교 육 평 가	2	전 공	교 육 평 가	3	
교 육 행 정 및 교 육 경 영	2	전 공	교 육 행 정 학	3	
교 육 의 사 회 학 적 이 해	2	전 공	교 육 사 회 학	3	

※ 대체인정시 대체인정받은 교직과목의 취득 학점만큼 교육학과 전공과목(기반·심화)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별표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학과별	구분	자격증표시과목	비 고
교 육 학	학	교 육 학	
한 문 교 육	한 문	한 문	
수 학 교 육	수 학	수 학	
컴 퓨 터 교 육	정 보 · 컴 퓨 터	정 보 · 컴 퓨 터	



## 6.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 1. 교직과정의 이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1학기부터 교직과정 이수과목표에 따라 해당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이수에관한내규 제3조제1항)

### 2. 교직과정 지원서 제출

- ① 제2학년 제1학기부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제2학년 제2학기 소정 기간내에 교직과정 지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이수에관한내규 제3조제2항)
- ② 1991학년도 및 그 이전 입학생으로서 제2학년 제1학기에 지원서를 이미 제출하고, 제2학년 제2학기에 휴학한 학생도 제2학년 제2학기에 복학할 경우 교직과정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직과정 지원서를 접수한 후, 소속학과(부)별로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학과(부)의 장은 해당학생에게 명단을 확인케 하여 지원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교직과정 지원서 접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교직과정 지원서(소정양식) 1부.
  -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3.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정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정은 교직과정 지원서를 제출한 제2학년 제2학기 재학생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학부)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교직과정이수에관한내규 제4조)

- ①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정시기는 제2학년 제2학기말 성적평가 후에 실시한다.
- ②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정은 다음과 같다.
  -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은 교직과정 조정선발인원에 따라 선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 학과(부) 또는 계열별 입학생으로서 복학 또는 재입학으로 인하여 교직과정이 미설치된 학과(부)로 배정을 받은 경우와 원적 학과(부)의 폐과 또는 학과(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직과정이 폐지되었을 경우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없다.
-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기준은 교직과정 수강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의 제2학년 제1,2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순으로 하되, 성적, 인성, 적성, 자질 등을 고려하여 소속학과(부)의 장이 추천한다. 단, 제2학년 제1학기에 휴학하고, 제2학년 제2학기에 복학한 학생은 교직과정이수에관한내규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천에 요건이 되는 성적 순위 명단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 (1) 제2학년 제1학기 성적은 성적정정이 완료된 성적으로 산출한다.
  - (2) 제2학년 제2학기 성적은 성적정정 이전의 성적으로 산출한다.
  - (3) 계절학기 수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학과(부)의 장이 제2학년 제2학기 성적의 정정으로 인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추천명단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학년 제1학기 개강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명단과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소속대학행정실로 제출하고, 관련 학생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제2학년 제1, 2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순으로 명단 작성 후 소속학과(부)장에게 송부
  - (2) 교육부 승인인원을 학과(부)의 장에게 추천 의뢰
  - (3) 소속학과(부)의 장이 성적을 기준으로 인성, 적성,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소속대학행정실로 추천
  - (4) 명단 확정
- ⑦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학



년 제1학기 개강후 1개월 이내에 소속학과(부)로 명단을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정에서 탈락된 학생의 경우,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선택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처리한다.
- ⑨ '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통합된 학과(부)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통합된 학과(부)로 졸업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승인인원 (2017입학생기준)]**

대학	학과(부)	표시과목	승인인원
유학대학	유학·동양학	도덕·윤리	5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국어	4
	영어영문학	영어	5
	프랑스어문학	프랑스어	3
	중어중문학	중국어	3
	독어독문학	독일어	3
	한문학	한문	3
	러시아어문학	러시아어	3
	사학	역사	4
	문헌정보학	사서교사(2급)	3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일반사회	4
	아동·청소년학	유치원정교사(2급)	3
경제대학	경제학	일반사회	6
	통계학	수학	4
경영대학	-	상업정보	5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	생물	5
	수학	수학	5
	물리학	물리	4
	화학	화학	5

대학	학과(부)	표시과목	승인인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	전기, 전자, 통신	5
공과대학	화학공학/고분자공학	화학공	5
	신소재공학	재료	4
	기계공학	기계, 재료	4
	건설환경공학	건설	4
생명공학대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농공	3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	체육	7
예술대학	미술학	미술	3
	디자인학	디자인, 공예	3
	연기예술학	연극영화	3
	영상학	연극영화	3

**4. 교직 및 전공과목 이수**

- ① 교직과정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제3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확인해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의 교직과정 이수과목표에 따라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이수에관한내규 제5조 제1항)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교직과목은 영역에 따라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학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학칙시행세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제1전공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 과목표]

영역	교과목명	1		2		3		4		계
		1	2	1	2	1	2	1	2	
교직 이론 영역	교육학개론	2								12 (택6 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영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6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 실습 영역	교육실습							2		4
	교육봉사활동								2	
소 계										22

5. 성적

-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생은 전체 학년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교직과정이수에 관한내규 제6조)
-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은 전공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 취득성적으로 산출한다.
- ③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성적은 다음과 같이 등급 평가를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A+	A	B+	B	C+	C	D+	D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6. 기본이수영역

- ① 교직과정생은 소속학과(부)의 전공과목 중에서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7과목(21학점)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수에 관한내규 제7조)
- ② 자격증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및 해당 과목은 별표1과 같다.
- ③ 자격증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및 해당 과목은 소속학과(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전공과목 중에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b. 소속학과(부)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타 학과(부)의 과목 또는 교양.기초과목 중에서 지정한다.
  - c. 삭제

7.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표시과목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직과정이수에 관한내규별표2와 같다.

8. <삭제>

9. 교직복수전공의 이수

- ① 교직복수전공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에 한하여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교직과정생은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없다.
- ② 교직복수전공자는 지정된 기간에 교직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하며, 일반복수전공자라도 선발되어야 한다.
- ③ 교직복수전공의 이수는 동일 교사자격 종목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④ 교직복수전공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교직복수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0.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이수

- ① 교육실습의 이수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실습은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a.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제3학년 제2학기 초에 교육실습신청서를 소속대학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b.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교육실습비는 교육실습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c. 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한 후 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실습비를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복학한 후 다시 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월처리한다.
  - d. 교육실습은 매학년도 제1학기에 실시하며, 수강신청시 교육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한다.
- ③ 교육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a. 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사범대학장이 정한다.
  - b. 교육봉사활동은 최소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졸업 시까지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c. 교육봉사활동은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여 이수해야 한다.
  - d.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류는 사범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성품의 사회봉사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11. 산업체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① 공업계 교직과정생은 위 10항의 교육실습외 별도로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간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예정자는 제3학년 제2학기 초에 소정의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를 소속대학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체 현장실습은 비학점 필수과목으로 이수한다.
- ④ 산업체 현장실습 시기는 3학년 2학기 동계방학중 또

는 4학년 1학기 하계방학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산업체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실습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1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제4학년 제2학기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수예관한내규 제12조)
- 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2) 성적증명서교부원 1부.

### 13.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의 방법

무시험검정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14. 교원자격 복수취득을 위한 연계교육과정 운영

- ① 교원자격 복수취득을 위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교육과정 이수과목표에 따라 해당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교원자격 복수취득을 위한 연계교육과정은 문과대학 사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교직과정생이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③ 연계교육과정 이수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1)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과목(분야) 해당교과목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유학대학	유학동양학	도 덕 · 윤 리	도덕·윤리교육론	동 서 비 교 윤 리 학(3)	유 학·동 양 학	
			동양윤리사상	유 교 윤 리 학(3)		
			한국윤리사상	한 국 윤 리 사 상(3)		
			윤리고전강독	유 가 고 전 영 어 강 독(3)		
			민주주의론	유 가 정 치 사 상(3)		
			도덕심리학	동 양 의 심 학(3)		
			시민교육론	한 국 의 종 교 와 문 화(3)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국 어	국어교육론	국 어 교 육 론(2)	교 육 학	
			국어학개론	국 어 학 연 구 입 문(3)		
			국어사	국 어 사(3)		
			국문학개론	국 문 학 연 구 입 문(3)		
			국 문학 사	현 대 문 학 사(3)		2과목중택1
				고 전 문 학 사(3)		
			문 학 교 육 론	현 대 소 설 론(3)		4과목중택1
	고 전 소 설 론(3)					
	현 대 시 론(3)					
	고 전 시 가 론(3)					
의사소통교육론	비 교 문 학 문 화 론(3)					
영어영문학	영 어	영 문 학 개 론	미 국 문 학 개 관 1(3)	3과목중택1		
			영 문 학 개 관 2(3)			
			미 국 문 학 개 관 2(3)			
		영 어 학 개 론	영 어 학 입 문(3)	영 어 영 문 학		
		영 어 문 법	영 문 법 의 이 해(3)			
		영 어 회 화	영 어 회 화 및 작 문(3)		2과목중택1	
			의 미 와 영 어 사 용(3)			
		영 어 응 용 음 성 학	응 용 언 어 학(3)		2과목중택1	
			영 어 발 음 의 이 해(3)			
		영 어 교 육 론	언어습득과영어교육(3)		2과목중택1	
영어교수방법과인지(3)						
영 미 문 화	영 미 산 문 의 이 해(3)	2과목중택1				
	영어의사회문화적이해(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문과대학	프랑스어 문 학	프랑스어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권사회와문화(3)	5과목 중 택1	프랑스어문학
				프랑스문학과영화(3)		
				프랑스문학과신화(3)		
				프랑스사회문화토픽(3)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소설(3)	6과목 중 택1	
				프랑스단편소설(3)		
				프랑스문학사 1(3)		
				프랑스문학사 2(3)		
				프랑스문학탐색(3)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문법(3)	2과목 중 택1	
	프랑스어문장구조의이해(3)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회화 1a(3)	2과목 중 택1			
		프랑스어회화 1b(3)				
	프랑스문학사	프랑스어읽기 1(3)	2과목 중 택1			
		프랑스어읽기 2(3)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작문 1(3)	2과목 중 택1			
		프랑스어작문 2(3)				
	프랑스어교육론	Delf 프랑스어(3)	2과목 중 택1			
		프랑스어커뮤니케이션(3)				
	중어중문학	중국어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학의이해(3)		중어중문학
중국문학개론			중국고대문학사(3)	2과목 중 택1		
			중국근대문학사(3)			
중국어문법			중문법(3)	2과목 중 택1		
중국어회화			고급중회화 1(3)			
			고급중회화 2(3)			
중국어강독			고급중어강독(3)			
중국어작문			중작문실습(3)			
한문강독	기초중국고문(3)					
중국어권문화	중국명시감상(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문과대학	독어독문학	독일어	독일어학개론	독어학개론 I(3)	독어독문학	
			독어회화	독일어능력시험(3)		
			독일어문법	전공심화독문법(3)		
			독일문학사	독문학사(3)		
			독일어권문화	유럽속의독일(3)		
			독일어교육론	독어학개론 II(3)		
			독일어권문학개론	EU와독일어권문화(3)		2과목중 택1
	서사문학비평(3)					
	러시아어 문학	러시아어	러시아문학개론	19세기 러시아 문학과 사회(3)	2과목중 택1	
				20세기 러시아 문학과 사회(3)		
			러시아어권문화	러시아 예술의 이해(3)	2과목중 택1	
				러시아 문화세미나(3)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어학의 이해 1(3)	2과목중 택1	
				러시아어학의 이해 2(3)		
			러시아어회화	중급러시아어회화 1(3)	2과목중 택1	
				중급러시아어회화 2(3)		
			러시아어문법	중급러시아어 1(3)	2과목중 택1	
				중급러시아어 2(3)		
			러시아어작문	중급러시아어연습 1(3)	2과목중 택1	
				중급러시아어연습 2(3)		
			러시아어강독	러시아지역강독 1(3)	2과목중 택1	
				러시아지역강독 2(3)		
	한문학	한문	한문교육론	한문교육론(3)	한문교육	
			한문학개론	한문학의이해(3)		
			한문문법	한문문법(3)		
			한문학사	나려한문학사(3)		2과목중 택1
				이조한문학사(3)		
한시선독			역대한시선독 1(3)	2과목중 택1		
			역대한시선독 2(3)			
경서강독			사서강독 1(3)	2과목중 택1		
	사서강독 2(3)					
역대산문선독	이조산문선독(3)	한문학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문과대학	사 학	역 사	역 사 교 육 론	역 사 교 육 론(3)	사 학
			역 사 학 개 론 / 역 사 학 방 법 론	역 사 학 의 이 론 과 실 제(3)	
			고 대 사	한 국 고 대 사(3)	
			한 국 사	한 국 현 대 사(3)	
			세 계 사	중 국 의 역 사 2(3)	
			근 대 사 / 분 야 사	한 국 근 대 사(3)	
			현 대 사	서 양 현 대 사 의 이 해(3)	
	문헌정보학	사서교사 (2급)	분 류 학	정 보 분 류 론(3)	문 헌 정 보 학
			도 서 관 전 산 화	디 지 털 도 서 관 구 축 론(3)	
			학 교 도 서 관 운 영	학 교 도 서 관 미 디 어 센 터 경 영 론(3)	
			정 보 봉 사 론	정 보 서 비 스 론(3)	
			독 서 지 도 론	독 서 지 도 론(3)	
			목 록 학	정 보 조 직 론(3)	
정 보 검 색			정 보 검 색 론(3)		
사회과학대	행 정 학	일반사회	법 과 사 회	행 정 법 총 론(3)	행 정 학
			정 치 와 사 회	정 책 학 원 론(3)	
			경 제 와 사 회	행 정 과 경 제 1: 미 시 경 제 론(3)	
			사 회 과 학 방 법 론	사 회 과 학 조 사 방 법 론(3)	
			인 간 과 사 회	공 공 조 직 관 리 론(3)	
			인 간 과 행 정	행 정 학 개 론(3)	
			시 민 교 육 과 사 회 윤 리	시 민 사 회 와 국 정 관 리(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사회과학 대	아동·청소년학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2과목 중택1	아동·청소년학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3)		
			영유아발달과교육	아동발달(3)	2과목 중택1	
				발달심리학(3)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3)	3과목 중택1	
			유아언어교육	언어지도(3)		
				아동문학교육(3)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3)	2과목 중택1	
유아음악교육	아동음악(3)					
부모교육	부모교육론(3)	2과목 중택1				
	부모자녀관계(3)					
경제대학	경제학	일반사회	정치와사회	정치학입문(3)	경제학	
			경제와사회	경제학입문(3)		
			문화와사회	문화인류학(3)		
			법과사회	현대사회와법(3)		
			인간과사회	사회학입문(3)		
			일반사회교육론	사회교과교육론(3)		
	통계학	수학	현대대수학	대수학(3)	수학교육	
			해석학	해석학 1(3)		
			정수론	정수론(3)		
			선형대수	선형대수학의응용(3)		
			위상수학	위상수학 1(3)		
			확률및통계	수리통계학입문(3)	통계학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3)	수학		
경영대학	경영학	상업정보 • 표시과 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 터 적용) [상업정보 → 상업]	마케팅관리론	마케팅관리(3)	경영학	
			재무관리	재무관리(3)		
			경영정보	경영정보시스템(3)		
			회계원리	회계원리(3)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3)		
			무역학개론	국제비즈니스협상과계약(3)		
경영정보	경영정보처리(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자연 과학 대	생명 과학	생 물	세 포 학	세 포 생 물 학(3)			생 명 과 학	
			식 물 생 리 학	식 물 생 리 학(3)				
			동 물 생 리 학	동 물 생 리 학(3)				
			유 전 학	유 전 및 유 전 체 학(3)				
			분 류 학	식 물 분 류 학(3)	2과목중 택 1			
				생 태 학(3)				
			미 생 물 학	미 생 물 학(3)				
	생 물 화 학	생 화 학(3)						
	수 학	수 학	해 석 학	해 석 학(3)			수 학	
			현 대 대 수 학	현 대 대 수 학(3)				
			미 분 기 하 학	미 분 기 하 학(3)				
			위 상 수 학	위 상 수 학(3)				
			확 률 및 통 계	확 률 및 통 계(3)				
			복 소 해 석 학	복 소 해 석 학(3)	5과목중 택 2			
			정 수 론	정 수 론(3)				
			조 합 및 그 래 프 이 론	조 합 및 그 래 프 이 론(3)				
			기 하 학 일 반	기 하 학 일 반(3)				
	선 형 대 수	선 형 대 수(3)						
	물 리 학	물 리	물 리 교 육 론	과 학 교 육 론(3)			물 리 학	
			역 학	일 반 역 학 1(3)				
			전 자 기 학	전 자 기 학 1(3)				
			양 자 역 학	양 자 역 학 1(3)				
			열 및 통 계 물 리	열 및 통 계 물 리 1(3)				
			파 동 및 광 학	양 자 광 학(3)				
			전 산 물 리	전 산 물 리 학(3)				
	화 학	화 학	화 학 교 육 론 (또는 과학교육론)	과 학 교 육 론(3)			물 리 학	
			물 리 화 학	물 리 화 학 1(3)	2과목중 택1			
				물 리 화 학 2(3)				
			물 리 화 학 실 험	물 리 화 학 실 험 1(1)	2과목중 택1			
				물 리 화 학 실 험 2(1)				
유 기 화 학			유 기 화 학 1(3)			화 학		
유 기 화 학 실 험			유 기 화 학 실 험 1(1)					
무 기 화 학			무 기 화 학 1(3)					
무 기 화 학 실 험			무 기 화 학 실 험 1(1)					
분 석 화 학			분 석 화 학 1(3)					
분 석 화 학 실 험	분 석 화 학 실 험(2)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정보통신 대학	전자전기 공학	전 기 전 자 통 신  • 표시과 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 터 적용) [전기·전 자·통신 → 전자, 전기, 통 신]  • 컴퓨터 공 학 과 2017학 년도부터 신 입 생 선발하지 않음	회 로 이 론	회 로 이 론 1(3)	전자전기공학	
			전 기 자 기 학	전 기 자 기 학 1(3)		
			디 지 털 시 스템	논 리 회 로(3)		
			마이크로프로세서	컴 퓨 터 구 조 론(3)		
			전 자 기 기	전 자 회 로 1(3)		
			전 기 전 자 실 험	기 초 회 로 실 험(2)		2과목 모두 이수
				전 자 회 로 실 험(2)		
반 도 체 공 학	반 도 체 공 학(3)					
소프트웨어 대학	컴 퓨 터 공학	디 지 털 시 스템  디 지 털 회 로 실 험  • 컴퓨터 공 학 과 2017학 년도부터 신 입 생 선발하지 않음	디 지 털 시 스템	컴 퓨 터 구 조 개 론(3)	컴퓨터공학	
			디 지 털 회 로 실 험	논 리 회 로(3)		
			마이크로프로세서	마 이 크 로 프 로 세 서(3)		
			디 지 털 통 신	테 이 터 통 신(3)		
			컴퓨터네트워크	컴 퓨 터 네 트 워 개 론(3)		
			무 선 통 신 시 스템	통 신 시 스템(3)		전자전기공학
			통 신 이 론	디 지 털 통 신(3)		컴퓨터공학
공과대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화 공 섬 유  • 표시과 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 터 적용) [화공·섬 유 → 화 공]  고 분 자 공 학	화 공 양 론	화 공 계 산(3)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 리 화 학	공 업 물 리 화 학 1(3)		
			유 기 화 학	공 업 유 기 화 학 1(3)		
			화 공 열 역 학	화 공 열 역 학 1(3)		
			생 물 화 학 공 업	생 물 화 학 공 학(3)		
			반 응 공 학	반 응 공 학(3)		
			고 분 자 공 학	고 분 자 공 학 입 문(3)		
	기계공학	기 계 금 속  • 표시과 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 터 적용) [기계·금 속 → 기 계, 재료]	열 역 학	열 역 학(3)	기계공학	
			유 체 역 학	유 체 역 학(3)		
			기 계 재 료	기 계 재 료(3)		
			기 계 설 계	기 계 설 계 입 문(3)		
			기 계 공 작 법	기 계 제 작(3)		
			제 어 공 학	제 어 공 학(3)		
자 동 차 공 학	자 동 차 공 학(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	기계·금속 • 표시과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예정자부터 적용) [기계·금속 → 재료]	열역학	재료 열역학1(3)	신소재공학	
			금속강도학	신소재강도학(3)		
			금속조직학	신소재공학개론 1(3)		
			철강재료학	신소재프로세스공학(3)		
			주조공학	재료조직학개론(3)		
			금속재료	금속재료(3)		
			부식방식학	에너지전기화학(3)		
	건설환경공학	건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3)	건축토목공학부	
			구조역학	구조역학(3)		
			건축설계	건축종합설계(4)		
			건축시공(토목시공)	건설관리(3)		3과목 중택1
				건설시공학(3)		
				건축시공및재료1(3)		
			건축설비	건축과에너지(3)		2과목 중택1
건축조명시스템(3)						
건축재료	건설재료및실습(3)					
환경위생공학	환경공학개론(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3)					
측량학	측량정보학및실습(3)					
토질역학	토질역학(3)					
수리학	수리학(3)					
사범대학	교육학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과정(3)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평가	교육평가(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수-학습이론	현대학습이론(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3)		
			교육행정	교육행정학(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사범대학	한문교육	한 문	한 문 교 육 론	한 문 학 습 지 도 1(3)	2과목 중 택1	한 문 교 육
				한 문 교 육 론(3)		
			한 문 학 개 론	한 문 학 개 론(3)	2과목 중 택1	
				한 문 학 비 평(3)		
			한 문 소 설 선 독	한 문 소 설(3)	2과목 중 택1	
				한 문 소 설 특 강(3)		
			경 서 강 독	경 전 강 독 1(3)	2과목 중 택1	
				경 전 강 독 2(3)		
			역 대 산 문 선 독	역 사 산 문 강 독(3)	3과목 중 택1	
				이 조 산 문(3)		
			한 문 학 사	한 국 한 문 학 사 1(3)	2과목 중 택1	
				한 국 한 문 학 사 2(3)		
			한 시 선 독	역 대 한 시 선 독(3)	2과목 중 택1	
				한 시 론(3)		
	수학교육	수 학	수 학 교 육 론	수 학 교 육 론(3)		수 학 교 육
			해 석 학	해 석 학 1(3)	2과목 중 택1	
				해 석 학 2(3)		
			선 형 대 수	선 형 대 수 학 의 응 용(3)		
			현 대 대 수 학	추 상 대 수 학 1(3)		
			미 분 기 하 학	미 분 기 하 학 1(3)		
			위 상 수 학	위 상 수 학 1(3)		
	확 률 및 통 계	확 률 통 계 학 1(3)				
	컴퓨터교육	정 보 컴퓨터	컴퓨터(정보)교육론	컴 퓨 터 교 육 개 론(3)		컴 퓨 터 교 육
			테 이 터 베 이 스	테 이 타 베 이 스(3)		
			자 료 구 조	자 료 구 조(3)		
			프 로 그 래 밍	기 본 프 로 그 래 밍(3)		
			네 트 워 크	컴 퓨 터 네 트 워 크(3)		
			컴 퓨 터 구 조	컴 퓨 터 구 조(3)		
소 프 트 웨 어 공 학			소 프 트 웨 어 공 학(3)			
알 고 리 즘			알 고 리 즘(3)	2과목 중 택1		
			인 공 지 능(3)			
운 영 체 제	운 영 체 제(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생명공학 대학	바이오 메카트로닉스학	농 공	농업기계	기 초 역 학(3)		바이오 메카트로닉스학
			농산가공기계학	바 이 오 영 상 처 리 공 학(3)		
			농업시설	시 스템 자 동 화 공 학(3)		
			농업기계설계학	응 용 기 계 요 소 설 계(3)		
			농업수리/유체역학	응 용 열 역 학(3)		
			농업동력/농업동역학	응 용 동 역 학(3)		
			농업정보	바 이 오 전 기 전 자 공 학(3)		
스 포 츠 과 학대 학	스포츠과학	체 육	운동학습및심리	운 동 학 습 및 심 리(3)		스 포 츠 과 학
			스포츠사회학	스 포 츠 사 회 학(3)		
			운동생리학	운 동 생 리 학(3)		
			운동역학	운 동 역 학(3)		
			체육측정평가	체 육 측 정 평 가(3)		
			체육사·철학	체 육 사·철 학(3)		
			건강교육	건 강 교 육(3)		
예술대학	미술학	미 술	소 묘	드 로 잉 1(3)	2과목 중 택1	미 술 학
				드 로 잉 2(3)		
			한 국 화	수 목 기 법 1(2)	2과목 중 택1	
				수 목 기 법 2(2)		
			조 소	입 체 조 형 1(2)	2과목 중 택1	
				입 체 조 형 2(2)		
			한 국 미 술 사	한 국 미 술 사 1(3)	2과목 중 택1	
	한 국 미 술 사 2(3)					
	동 양 미 술 사	동 양 예 술 론(3)				
	서 양 미 술 사	서 양 미 술 사 1(3)	2과목 중 택1			
		서 양 미 술 사 2(3)				
	표 현 기 법	표 현 기 법 1(3)	2과목 중 택1			
		표 현 기 법 2(3)				
	디 자 인 학	디 자 인 공 예	디자인 • 표시과 목 변경 (2019년 교직이수 예정자부 터 적용) [디자인· 공예 → 디자인, 공예]	디자인·공예교육론	디 자 인 론(2)	
디 자 인 마 케 팅 론(2)						
색 체 학				색 체 연 구(3)		
그 래 픽 디 자 인				디 자 인 스 튜 디 오 1(3)	2과목 중 택1	
				인 포 메 이 션 디 자 인(3)		
섬 유 공 예				디 자 인 스 튜 디 오 2(3)	2과목 중 택1	
				포 장 디 자 인 1(3)		
시 각 디 자 인				공 간 디 자 인 1(3)	2과목 중 택1	
	시 각 디 자 인 1(3)					
기 초 조 형	입 체 조 형(3)					
기 초 소 묘	기 초 디 자 인 1(3)					



대학	학과(부)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 (분야)	기본이수 해당과목		교과목개설주관 학과(부)	
예술대학	영상학	연극영화	시나리오작법	시나리오워크샵 1(3)	2과목 모두 이수	영상학	
				시나리오워크샵 2(3)			
			영화사	영화사(2)			
			영화개론	영상학원론(3)			
			스토리텔링워크샵	영상스토리텔링 1(3)			
			영화제작실습	영상스토리텔링 2(3)			
			영화기술	영상편집워크샵(2)			
	영화분석과비평	영상미학(3)					
	연기예술학	연극영화	연극영화	연극사	연극의이해(3)	3과목 중택 1	연기예술학
				연극영화교육론	교육연극론(3)		
				연기(화술)	에쥬드(3)		
					보이스(3)		
					스피치(3)		
				연극제작	졸업공연(4)		
영화제작실습				발단전개결말워크샵(3)	2과목 중택 1		
	프레임/쇼트(3)						
영화기술	영화기술(3)						
스토리텔링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3)						

(별표 2) 교직부전공 표시과목 관련 학과표 : 삭제





## 7.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수예정자선정)**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간내에 이수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과목 이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별표의 이수과목표에 따라 필수과목(5과목 15학점)과 평생교육 대상관련 영역(8과목) 및 평생교육 내용관련 영역(13과목)에서 5과목 1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교과목 인정)**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자가 본인이 소속한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별표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평생교육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조(성적)**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은 80점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정책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후 3학년부턴 현장실습인정기관에서 방학기간중 4주간 실시하며(실습비는 본인부담), 신청서는 매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증 발급신청)** 소정의 평생교육사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 1. 1988학년도이전 입학생으로서 졸업시까지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전문요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1989학년도이후 입학한 자로서 이 내규 시행전에 전문요원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내규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내규는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요원과정 이수과목은 이 내규에 의한 전문요원과정 이수과목으로 본다.
- ③(적용례) 제6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학년도에 제4학년인 전문요원과정 이수자의 사회교육실습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 1. 이 내규 제3조는 2000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 2. 이 내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과목은 이 내규에 의한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으로 본다.
- 3. 이 내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내규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내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평생교육사 이수과목표**

영역	교과목명	비고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15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과목 (평생교육 대상 관련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15학점
선택과목 (평생교육 내용 관련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계		30학점